

SAC.b.3  
39

공청회 자료집

## 미군기지 환경오염과 대책

일시: 1998년 7월 1일 오후 2시

장소: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소강당(종로5가)

주최: 녹색연합(747-8500)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주관: 한미행정협정 개정위원회 744-1211)

공청회 자료집

## 미군기지 환경오염과 대책

일시: 1998년 7월 1일 오후 2시

장소: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소강당(종로5가)

주최: 녹색연합(747-8500)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주관: 한미행정협정 개정위원회 744-1211)

### **글쓰는 순서**

말제문 1

## 주한미군기지와 환경오염: 미국정부의 국가책임과 피해자의 법적구제 최승환(경희대 법대 교수)

5

답제문 2

## 미군기지 환경오염과 환경기준안의 제 문제 김제남(녹색연합 사무처장)

21

참고자료

|              |    |
|--------------|----|
| 미국방성 해외환경지침서 | 33 |
| 미군기지환경오염사례   | 39 |

## 한국 법학회

한국 법학회

한국 법학회

한국 법학회  
한국 법학회  
한국 법학회

한국 법학회

한국 법학회

한국 법학회

한국 법학회

한국 법학회

한국 법학회

한국 법학회

한국 법학회

한국 법학회

한국 법학회

한국 법학회

한국 법학회

한국 법학회

한국 법학회

한국 법학회

한국 법학회

한국 법학회

### 공정회에 함께 하시는 분들을 소개합니다

사회 이장희(한미행정협정 개정위원회 위원장,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

발제1 최승환(경희대 법학과 교수)

발제2 김제남(녹색연합 사무처장)

토론 장주영(변호사)

토론 성재호(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토론 최종수(군산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 집행위원장)

토론 손기웅(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미국정부의 국가책임과 피해자의 법적 구제

최승환

# 주한미군기지와 환경오염 : 미국정부의 국가책임과 피해자의 법적 구제

崔 昇 煥\*

## | 목 차 |

- I. 문제의 제기
- II. 駐韓美軍基地 環境汚染에 대한 美國政府의 國家責任
  - 1. 주한미군기지내의 환경오염에 대한 미국정부의 국가책임
  - 2. 주한미군기지 주변의 환경오염에 대한 미국정부의 국가책임
  - III. 環境汚染 被害者의 法的 救濟
- 1. 국가배상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 2. 배상청구절차
- 3. 미국연방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
- IV. 基地 및 請求權條項의 問題點과 改正方向
  - 1. 기지 및 청구권조항의 문제점
  - 2. 기지 및 청구권조항의 개정방향
- V. 맷음말

## I. 문제의 제기

지난 1998년 3월 7일 경기도 의왕시 백운산 정상부근에 소재한 미군기지내 경유탱크를 연결하는 지하 송유관이 터지는 사고로 그동안 30여년동안 무공해지역으로 보존되어 왔던 백운산과 윙립천일대는 악취가 진동하는 회복불능의 오염지역으로 변해 버렸다고 한다. 환경전문가들은 사고지역의 토양층은 20~80cm 두께로 광범위하게 기름에 배여 있어 앞으로 100년 이상이 경과해도 정상회복이 불가능한 최악의 산악 환경사고라고 지적하고 있다.<sup>1)</sup>

일반적으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施設 및 區域(이하 基地라 약함)의 이용과 군사활동에 관련된 환경파괴의 실태에는 비행기 이착륙과 포격훈련 등에 따른 소음피해, 유해물질배출, 실탄포격으로 인한 산림파괴, 군사훈련에 따른 자연파괴, 수질오염, 토양오염, 적토유출, 문화재파괴, 교육환경의 파괴, 원자력사용 군함운항과 핵무기보유에 따른 방사성물질배출 등이 포함된다. 특히 기지에서 배출되는 유독성 물질은 인간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것은 물론 생태계를 파괴하기도 한다. 주한미군기지 주변의 환경오염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을 뿐만아니라 피해보상문제와 관련하여 반미감정을 야기시켜 온 주요원인이기도 하다.

최근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에 소재한 주한미군 제7공군사격장(쿠니사격장) 일대에 거주하고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국제법무대학원 교수, 한미행정정개정위원회 위원

1) 「매일경제신문」, 1998.5.9. 5.16 환경부, 백운산계곡 유류유출사고 조사결과, 1998.5.12

R 43. 44

있는 주민 15명은 1998년 2월 28일 미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폭음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총 15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sup>2)</sup> 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피해를 이유로 관련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 사건은 오염의 주체가 외국군대와 외국주둔군기지라는 특수성때문에 그동안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이 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낸 최초의 집단소송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90년도 12월에 공표된 미국정부의 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서독주둔 미군이 야기시킨 모든 토양 및 수질오염을 정화시키는데 30억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명되었는데,<sup>3)</sup> 미국 및 독일환경법규가 미군기지내에서도 비교적 엄격히 준수되는 것으로 알려진 독일과 달리 한국의 경우에는 주한미군기지 및 주변의 환경오염을 정화하는데 '전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리라 본다. 따라서 현재 한국정부가 미군당국에 지불하고 있는 분담금(95년 기준 3억달러)에 비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미군기지관련 환경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철저한 대응책을 시급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sup>4)</sup> 주한미군기지와 관련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法的 救濟問題은 피해자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보호는 물론 한미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대등한 한미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도 시급하다.

그러나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문제는 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韓一美駐軍地位協定"<sup>5)</sup> [이하 '한-미 SOFA'라 약함]상의 제약과 한미 관계당국의 소극적 자세로 인해 아직까지 그 정확한 오염실태는 물론 피해방지와 사후 구제대책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sup>6)</sup> 이글은 주한미군기지와 그 주변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해 미군당국 또는 미국정부가 국가책임[국제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피해자'가 '한-미 SOFA'와 관련 국내법에 근거하여 한국정부와 가해자 또는 미국정부를 상대로 法的 救濟인 손해보상 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구체적인 節次를 검토하고자 한다.

## II. 駐韓美軍基地 環境汚染에 대한 美國政府의 國家責任

- 1. 주한미군기지내의 환경오염에 대한 미국정부의 국가책임
  - (1) 미국정부(미군당국)의 책임(원상회복 또는 손해보상/배상)을 부정하는 견해  
미국정부는 "본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를 시설과 구역이 미국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한국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본협정 제4조 1항) 따르
  - 2) [한겨레], 1998.3.2
  - 3) US News & World Report Nov. 1992, p30
  - 4) 98년도부터는 물가인상분을 감안하여 매년 10%씩 증액하기로 합의하였으며 98년도에는 3억 9천 9백만달러 상당의 분담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5) 한국과 미국간에 1966년 7월 9일에 체결되고 1967년 2월 9일에 발효된 '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의 공식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이며 '한미행정협정'이라 불리우기도 한다. 1991년에 부분적으로 개정된 통 협정은 본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개정합의양해사항(Revised Agreed Understanding) 등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6)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실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최승환,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서울국제법연구] (제4권 2호, 1997.11), 85~89쪽 참조

서 환경오염도가 심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군당국이 주한미군기지내의 토양에 대해 손상을 가한 경우에도 한국정부는 미군당국이나 미국정부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손해보상/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이 견해는 미군당국이 실제로 주장할 가능성성이 높으며 국내학자의 다수도 상기 견해를 지지하는 것 같다.

#### (2) 미국정부(미군당국)의 책임(원상회복 또는 손해보상/배상)을 긍정하는 견해

본협정 제4조의 취지는 미군당국이 제공받은 시설 및 구역 즉 기지에 대하여 필요한 개량 및 건축물 설치를 행한 경우 동 기지의 반환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며<sup>(1항)</sup>, 한국정부 역시 상호주의 원칙하에서 미군당국이 행한 개량 및 건축물 설치에 대해 미국정부에게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도록 한 것이다<sup>(2항)</sup>. 그러나 상기 조항은 특정지역을 주둔군의 군사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미군당국이 변형하거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반환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도록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입장에서 규정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기지내의 중대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해서는 '권리남용법리'에 입각하여 미국정부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즉 환경오염도가 심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군당국이 기지내의 토양에 대해 손상을 가한 경우에는 한국정부는 미군당국이나 미국정부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손해보상/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1996년 유엔국제법위원회(ILC)에서 채택된 국가책임초안에 따르면 중대한 환경오염행위는 국제범죄에 해당되는 것으로(제19조 제3항), 중대한 환경오염금지규칙에 대한 위반은 국제법상의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 2. 주한미군기지 주변의 환경오염에 대한 미국정부의 국가책임

기지관련 환경오염에 대한 미국정부의 국가책임은 기지내 환경오염피해와 기지주변의 환경오염피해로 구분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기지내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해 미국정부의 국가책임을 부인하는 견해를 취하더라도, 본협정 제4조 1항은 '기지자체'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의무를 면제시켜준 것이지 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배출로 인해 기지주변의 환경 및 주민에 손해를 끼친 경우까지 동 의무를 면제시켜준 것은 결코 아니다.

일반국제법상 각국은 자국관할내의 위험한 활동으로 인해 타국의 영역이나 재산 및 사람이 부담한 피해를 입힐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초국경간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국가의 방지의무는 국제판례상, 국제관습법상, 조약법상 확립된 國家의 基本的義務이다. 즉 모든 국가는 자국영역 또는 자국관할내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으로 타국의 영역이나 재산 및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히 배상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진다.<sup>7)</sup>

따라서 미군당국이 1차적 관리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영역내의 환경오염행위로 한국의 배타적 관할권하에 있는 '기지주변의' 영역이 환경피해를 입을 경우 한국정부는 초국경간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미국정부의 국가책임법리를 원용할 수 있다. 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배출로 인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해 미군당국은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의무를 지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당사국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보상/배상도 가능하다.

7) 초국경적 환경오염피해 방지의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최승환, "초국경적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방지의무", 「서울국제법연구」(제2권 2호, 1995.12), 171~90쪽 참조

### III. 環境汚染 被害者의 法的 救濟

#### 1. 국가배상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한-미 SOFA'의 본협정 제23조는 미국군대의 구성원[미군]이나 고용원에 대한 한국의 민사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sup>8)</sup> 동 조항은 일정한 분쟁에 있어 한국법원의 민사재판권을 인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國家免除特權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판결의 집행절차에 관한 경우나 또는 청구를 완전히 민족시키는 지급을 행한 경우에는 국가면제특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본협정 제23조 제5항 바, 제6항 라, 제9항 가).

민사청구권조항은 한국민의 사법적 권리보호를 위해 규정된 것으로, 동 조항과 관련하여 1967년에 동 협정의 시행에 관한 民事特別法이 제정·공포되었고 1970년에는 동 법의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어 국내 법절차에 적용되고 있다.<sup>9)</sup> 이하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배출로 인한 피해자의 법적 권리 및 구제를 미군이나 고용원에 의한 공무집행중의 행위와 비공무집행중의 행위로 구분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 (1) 미군이나 고용원에 의한 공무집행중의 행위로 야기된 환경오염피해

본협정 제23조 제5항은 미군이나 고용원(한국국민이나 한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고용원을 포함)에 의한 公務執行中의 작위 또는 부작위 또는 미국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작위, 부작위 또는 사고로서, 한국영역내에서 한국정부이외의 제3자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발생하는 청구권은 한국군인이 공무집행중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한국법상의 배상절차에 따라 한국정부가 심사하여 해결하거나 합의나 재판을 통해 결정된 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원'화로써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집행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은 비전투행위에 부수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본협정 제23조 제11항).<sup>10)</sup>

따라서 공무집행중의 행위로 야기된 환경오염피해자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國家賠償法 규정에 의해 국가배상을 신청하거나 한국정부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민사특별법 제2조 제1항). 그리고 미군이 접유,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과 기타 시설이나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국가배상법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동법 제2조 제2항). 다만 피해자인 제3자가 미군과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때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동법 제3조).

손해에 대해 미국인이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되어 합의되거나 재판에 의해 결정된 배상금은 미국이 75%를 한국이 25%를 부담한다. 손해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의 공동책임이거나 손해가 한국군대나 미국군대에 의해 발생했거나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책임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이 배상금을 균등하게 즉 각각 50%씩을 분담한다(본협정 제23조 제5항 마). 한국정부가 지급한 각 청구는 그

8) 미국군대에 파견근무하는 한국증원군대카투사의 구성원은 제23조의 적용상 미국군대의 구성원으로 간주되며, 고용원에는 한국국민이나 한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고용원을 포함된다(본협정 제23조 제5항, 제12항).

9) 다만 타방당사국 군대의 재산에 대한 손해, 해난구조로 인한 청구권, 공무집행중의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한 청구권, 소액청구권에 대해서는 한미당국이 모두 타방당사국에 대한 정부차원의 민사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본협정 제23조 제1항.

10) 또한 당사자간의 계약으로부터 야기된 청구권, 공무집행외에 발생한 청구권, 미국군대의 군대차량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청구권으로서 미국군대가 법률상 책임지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 등에는 동 규정(동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명세서와 상기 분담안과 함께 미군당국에 통지하는데, 2개월내에 회답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분담안은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동조 제5항 라).

공무집행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仲裁人에게 회부하며, 이점에 관한 중재인의 재정은 최종적이며 확정적이다. 한미 양정부간의 합의에 따라 선정되는 1인의 중재인은 사법관계의 상급자위에 있거나 또는 있었던 한국국민중에서 선정된다. 중재인의 재정은 양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으며 최종적이다(동조 제2항 나, 제8항).

#### (2) 미군이나 고용원에 의한 비공무집행중의 행위로 야기된 환경오염피해

한국영역내에서 불법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서 공무집행중에 행해진 것이 아닌 행위로부터 발생한 미군이나 고용원에 대한 청구권은 한국당국이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배상액을 산정해서 그 보고서를 미군당국에 통보하면 미군당국은 지체없이 배상금 지급의 제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급제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非公務執行中の行爲로부터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자는 한국정부이든 제3자이든 상관없으며, 또한 인적손해이든 물적 손해이든 상관없다. 지급제의가 행해진 경우 청구인이 완전히 충족하는 것으로 이를 수락하는 때에는 미군당국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그 결정 및 금액을 한국당국에 통고한다(본협정 제23조 제6항 가, 나, 다).

청구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지급이 행해지지 못한 경우, 즉 미군당국이 지급하는 배상금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는 가해미군이나 고용원을 상대로 國內法院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동조 제6항 라). 또한 미군차량의 허가받지 아니한 사용으로부터 야기하는 청구권도, 미군이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조 제6항에 따라 처리한다(동조 제7항). 비공무집행중의 행위로 야기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청구역시 국가배상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민사특별법 제4조).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기지내에 한국법률에 의거한 강제집행에 따른 私有財產(단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동산은 제외됨)이 있을 때에는 미군당국은 한국법원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재산이 한국당국에 인도되도록 그 권한내의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본협정 제23조 제9항 나). 또한 한미 양당국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한 민사청구의 공정한 처리를 위한 증거의 모집에 있어서 협력하여야 한다(동조 제9항 다).

#### 2 배상청구절차

공무집행중의 행위로 야기된 환경오염피해자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법 규정에 의해 국가배상을 신청하거나 한국정부를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민사특별법 제2조 제1항). 피해자나 또는 그 유족으로 손해배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지 또는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국가배상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본부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약함]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신청을 받은 심의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과 미군당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2조). 위 신청을 접수한 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그 명을 받은 자는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여 심의회에 회부하며 심의회 위원장은 필요시 미군당국에 지체없이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3조). 한국당국과 미군당국은 민사청구권조항에 의거한 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증거의 모집에 협력하여야 한다(본협정 제23조 제9항 다).

심의회는 상기 조사를 기초로 공무집행중의 행위에 관한 본협정 제23조 제5항상의 청구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배상결정을 하고, 비공무집행중의 행위에 관한 본협정 제23조 제6항상의 청구에 대해서는 심의를 한 후 심의기록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심의결과를 보

고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sup>11)</sup> 법무부장관은 동 제1항상의 보고서 및 기록을 받은 경우에는 본협정 제23조 제6항상의 규정에 따른 배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심의회는 배상금의 지급 또는 기각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배상금사정을 한 경우 신청인과 관계심의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심의회는 지체없이 미군당국에게 본협정 제23조 제6항 (가)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신청인이 지급결정의 통지를 받고 그 지급을 원할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지급신청이 있으면 심의회 위원장은 지체없이 배상금 지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신청인은 지급결정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할 경우 한국법원에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기절차에 의한 지급(합의에 의한 해결에 따라 행해지거나 한국의 관할법원에 의한 판결에 따라 행해지거나를 불문함)이나 지급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관할법원에 의한 최종판결은 ‘한미양국’에 대해 구속력있는 최종적인 것이다(본협정 제23조 제5항 다). 여기에서 최종판결이라 함은 확정판결을 말하는데, 이에는 국가배상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 3. 미국연방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오염배출로 피해를 입은 한국인은, 상기 민사청구권조항에 따른 권리구제에 불복할 경우, 미국연방법원에 미군당국 또는 미국정부를 상대로 國際公私法을 제기할 수 있는가?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및 스웨덴간에 체결된 1974년 ‘환경보호협약’(Scandinavian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등과 같은 다수의 국제환경협약은 초국경적 환경오염의 피해자가 가해국의 국내법원에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sup>12)</sup> 1997년 10월 현재 한국과 미국간에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해 타방당사국(국민)의 손해배상소송을 허용하는 조약이 없다.

“고형폐기물처리법”<sup>13)</sup>(Solid Waste Disposal Act : SWDA), “대기정화법”<sup>14)</sup>(Clean Air Act : CAA), “유독물질보호법”<sup>15)</sup>(Toxic Substance Control Act : TSCA), “종합환경대응 보상 책임법”<sup>16)</sup>(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Liability Act of 1980 : CERCLA) 등과 같은 미국의 주요한 국내환경법규는 법규집행에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市民原告(citizens' suits)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모든 시민’(any person)은 법규를 위반한 자나 법규상의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지 못한 행정기관 또는 행정공무원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시민단체나 外國人에게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당사자자격이 인정된다.

예컨대 흔히 슈퍼펀드法(Superfund Act)으로 불리우는 CERCLA 제310조는 동 법을 위반한 자나 또는 동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부공무원을 상대로 연방지방법원에서 시민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모든

11) 민사청구권조항(본협정 제23조)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사정은 법무부장관이 행하며, 그 사정에 있어서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설치된 배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민사특별법 제4조).

12) 예컨대 핵에너지분야에서의 제3자 책임에 관한 1960년 파리협약(이하 ‘1960년 파리협약’이라 약함) 제13조, 해저광물자원의 개발로 인한 유류오염피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1977년의 런던협약(이하 ‘1977년 런던협약’이라 약함) 제11조 등.

13) 42 USCA 6901~6922(SWDA 1002~11012, 1994).

14) 42 USCA 7401~7671q (CAA 101~618).

15) 15 USCA 2601~2692 (TSCA 2~412).

16) 42 USCA 9801~9875 (CERCLA 101~405).

人'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 법원은 관련 규정이나 기준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민사벌칙을 부과하며, 후자의 경우 법원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에 규정된 의무 및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령한다.<sup>17)</sup> 유해폐기물 처리장의 정화를 위해 사용되는 기금인 슈퍼펀드는 민간 이해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는데, 외국인도 미국의 관할하에 있는 선박이나 시설이 유해물질을 해당 외국의 영해 및 인접수역으로 배출할 경우 오염피해에 대해 달리 보상을 못받은 경우에 한해 연방법원에 그 정화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sup>18)</sup>

그런데 상기와 같은 미국국내법상의 관련규정을 근거로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에 따른 한국인 피해자가 미군당국과 미국정부 또는 관련미군책임자를 상대로 미국연방법원에 국제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공무 및 비공무중 행위로 야기된 청구권문제에는 본협정 제23조(민사청구권조항)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주한미군기지부터의 환경오염에 관한 한국인 피해자의 소송에 대해 미국연방법원은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생각컨대 본협정 '제23조 제5항 다'는 배상금 지급여부에 관한 한국법원의 최종판결이 "한미양국"을 구속한다는 것이지, "피해자 개인"을 구속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가 민사청구권조항에 따른 구제에 불복하는 경우 상기 미국환경법상의 관련규정에 입각하여 미국연방법원에 국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인 피해자가 미국환경법상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연방법원은 미국국내법을 역외적으로 적용하여 미군당국으로 하여금 관련환경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하거나 배상금지급을 명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환경법이 초국경적 환경피해를 초래한 미국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판례법에 비추어 볼 때 긍정적이라 판단되나,<sup>19)</sup> 해외미군기지에 대해서는 미국환경법의 역외적용을 부인한 사례가 있다.<sup>20)</sup>

한편 1977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초국경적 오염에 관한 동등한 구제권 및 비차별체제의 이행에 대한 권고안'은 초국경적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받은 모든私人은 가해국의 법원에서 국내오염과 관련한 소송당사자와 같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오염의 방지 또는 오염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가해국의 모든 행정적 사법적 절차에 회부하고 참여하는 권리를 부여받도록 권고하고 있다.<sup>21)</sup> 한국인 피해자는 미국연방법원에 제소할 경우 상기 OECD 권고안을 적절히 원용할 수 있을 것이다.

#### IV. 基地 및 請求權條項의 問題點과 改正方向

17) 9659 (CERCLA 310).

18) 다만 이경우 해당 외국인은 자국과 미국간에 보상을 허용하는 협정이 체결되어 있거나 또는 해당 외국정부가 미국인에 대해서도 상호주의에 보상을 제공한다고 국무장관이 결정하는 경우에만 비용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9611 (l) (CERCLA 311).

19) Sierra Club v. Adams, 578 F2d 389 (D.C. Cir.1978) (파나마와 콜롬비아에서의 고속도로건설에 동 법이 적용된 경우); National Organization for Reform of Marijuana Laws (NORML) v. United States, 452 F. Supp.1266 (D.D.C. 1978) (멕시코에 소재한 대마 및 양귀비농장에서의 제초제살포에 미국이 참여한 것에 동 법이 적용된 경우); Wilderness Society v. Morton, 463 F2d 1261 (D.C. Cir.1972) (알래스카 횡단 파이프라인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와 관련한 소송에서 외국인의 제소권을 인정한 경우).

20) NEPA Coalition of Japan v. Aspin, 837 FSupp.466 (DDC:1993) (일본내 군사시설에서의 연방정부의 조치에 동 법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Greenpeace v. Stone (독일내에서의 연방정부의 탄약운반에 동 법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21)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for the Implementation of a Regime of Equal Right of Access and Non-Discrimination in Relation to Transfrontier Pollution, May 17, 1977, OECD Doc.C (77) 28 (Final), Annex, para4 ; 16 ILM977 (1977).

#### 1. 기지 및 청구권조항의 문제점

##### (1) 원상회복 및 보상의무의 면제

본협정 제4조 제1항은 미군당국이 한국정부에 기지[시설과 구역]를 반환할 경우 등 기지가 미군당국에 제공되었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면제시켜주고 있으며, 원상회복 대신으로 한국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 또한 면제시켜주고 있다. 반환된 기지내의 토양이 심하게 오염된 경우 정상적인 토지 사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미국과 소련으로부터 반환받은 한국과 필리핀 및 독일내의 기지는 심하게 오염된 결과 토지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토지정화를 위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보도가 있다.<sup>22)</sup>

##### (2) 환경관련규정의 결여

'한-미 SOFA'에는 환경관련규정이 없다. 따라서 현 '한-미 SOFA' 체제하에서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해서는 본협정 제23조(민사청구권조항)가 적용된다.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할 미군당국의 의무규정이나 또는 기지내에 대해서도 한국의 환경법규가 적용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미군당국의 협조가 없는 한, 한국당국이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 (3) 공무집행중의 행위로 야기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금 분담율의 불형평성

미군이나 고용원에 의한 공무집행중의 행위로 야기된 피해에 대해 한국정부가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상금의 25%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해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공동책임이거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무조건적 한미양당국이 균등하게 분담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따라서 동 규정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면 일방책임이거나 주된 책임을 부담하는 측이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하려고 할 것이고 피해에 대해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으면 배상금을 균등하게 분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특히 동 규정은 한미관계의 역학관계에 비추어볼 때 미군당국에 의해 적용될 가능성이 많다.<sup>23)</sup>

##### (4) 비공무집행중 행위로 야기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절차상의 문제점

'한-미 SOFA'에는 미군이나 고용원에 대한 재판서류의 송달절차, 법정출석에 대한 보장, 판결집행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만 미군당국은 원칙적으로 미군이나 고용원에 대한 한국법원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주장해서는 아니되며,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기지내에 한국법률에 의거한 강제집행에 따른 사유등산이 있을 경우 미군당국은 한국법원의 요청에 따라 동 재산이 한국당국에 인도되도록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하며, 민사청구의 공정한 처리를 위한 증거의 모집에 협력하여야 한다는 규정만이 있을 뿐이다(본협정 제23조 제9항 가, 나, 다).

따라서 비공무집행중의 행위로 야기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사청구의 경우 한국당국이 사정하고 미군당국에 지급하는 배상금에 대해 피해당사자가 만족하면 문제가 없으나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22) 이장희, "한미군사관계의 국제법적 조명 : SOFA의 시설과 기지조항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41권 제2호, 1996.12), 153쪽.

23) 장주영, "민사청구권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한미행정협정개정을 위한 공청회자료집, 1994.10), 26쪽.

재판진행과 판결집행 등에 있어 주둔군 및 기지의 특별한 지위때문에 민사특별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특이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비공무집행중의 행위로 야기된 민사청구를 접수한 한국법원의 관계직원이 가해미군이나 고용원에 재판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 기지경비병[현병]이 기지출입을 거부하거나 재판서류가 송달되더라도 관련미군이나 고용원이 한국법원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적절히 진행할 수가 없다. 설사 재판이 진행되어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가해미군이나 고용원이 기지내에 사유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본국으로 이미 출국했을 경우 배상금을 실제로 받는 것은 불확실하다.

## 2. 기지 및 청구권조항의 개정방향

### (1)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의무조항 신설

가. 기지자체의 중대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및 보상의무 규정 신설  
시설 및 구역에 관한 제4조 제1항은 미군당국이 한국정부에 기지를 반환할 경우 원상회복 및 보상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미~일 SOFA'도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4조 제1항). 상기 조항은 특정지역을 주둔군의 군사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미군당국이 변형하거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반환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도록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입장에서 규정된 것인데, 한국정부 역시 미군기지를 반환받을 경우 동 기지에 가해진 改良이나 기지내에 잔유한 건물 및 공작물[시설물]에 대해 미국정부에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규정(본협정 제4조 2항)을 고려해 볼 때 적절한 규정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기지내의 환경오염은 미군당국이 1차적인 관리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야기된 것이며 미군당국의 관리소홀로 야기된 상당한 오염정화비용을 한국당국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적어도 기지자체의 '중대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해서는 미군당국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에 보상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그리고 한국정부가 일방적으로 보상액을 결정하는 것은 미국정부가 반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보상액의 산정에 대한 절차규정의 합의 또한 중요하다. 예컨대 구체적인 보상액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한미양당국의 합의로 선정된 중재인이 판정하도록 하고, 중재인의 선정에 대해 당사국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한 절차규정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나. 기지주변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의무규정 신설

미군당국의 원상회복과 보상의무를 면제한 본협정 제4조 제1항은 '기지' 자체에 적용되는 것이지 한국의 배타적 영역관할권에 속하는 '기지주변의' 환경에 대해서도 적게되는 것은 아니다. 미군당국이 1차적 관리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지내의 환경오염행위로 한국의 배타적 관할권하에 있는 '기지주변의' 영역이 환경피해를 입을 경우 한국정부는 초국경간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미국정부의 국가책임법리를 원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배출로 인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해 미군당국은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의무를 지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보상/배상도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구체적인 보상/배상액은 민사청구권조항에 따라 선출된 중재인이 산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원상회복비용과 손해배상금의 부담은 '오염자부담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에 따라 원칙적으로 오염을 유발한 측이 전액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도록 한다.

### (2) 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미군당국의 의무조항 신설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해 한국정부가 갖는 국제법상의 제반권리 즉, 협의 및 사전통보 요청권, 시설 및 구역에의 접근권, 환경오염피해조사권, 환경오염관련자료의 제출요구권, 원상회복권과 피해보상/배상권, 환경오염규제/방지요구권 등은 국제관습법적으로 확립되었기 때문에 '한-미 SOFA'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한국정부는 상기 권리들을 원용할 수 있다.<sup>24)</sup> 그러나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미군당국의 소극적인 태도와 주한미군기지와 기지주변의 심각한 오염실태 등을 고려해 볼 때 상기 권리들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신속한 법적구제와 보다 효과적인 환경보호를 위하여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피해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국제관습법상의 제반권리를 명문화하여 미군당국의 구체적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분쟁방지 및 해결차원에서 바람직하다.

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미군당국의 의무규정을 신설할 경우에는 위에서 지적한 미군당국의 원상회복 및 손해보상/배상의무이외에도 ① 미군당국은 한국당국의협의의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기지주변의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당국에 사전에 적절히 통보할 것( : 협의 및 사전통보의무), ② 오염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미군당국은 1차적인 관리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지내의 특정한 시설 및 구역에의 접근을 한국당국에 허가할 것( : 시설 및 구역에의 접근보장의무), ③ 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피해발생에 대하여 미군당국이 자발적으로 진상규명과 피해방지에 협조하거나 한국당국의 환경피해조사요청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것( : 환경오염피해조사요청 허가의무), ④ 환경오염실태조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한국당국에 제출할 것( : 환경오염관련자료의 제출의무), ⑤ 기지로부터의 오염배출행위로 기지주변의 환경에 피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기지내 환경오염을 규제하거나 방지할 것( : 환경오염규제 및 방지의무), ⑥ 유해한 오염물질을 기지밖으로 불법으로 배출한 관련미군이나 고용원을 처벌하고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보장할 것( : 책임자처벌 및 재발방지보장), ⑦ 기지로부터의 오염배출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지주변의 한국인 피해자가 민사청구권조항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경우 한국당국의 관련증거 및 자료제출요청과 기타 청구절차에 최대한의 협조를 제공할 것( : 피해배상청구에의 협조) 등과 같은 미군당국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 (3) 환경법규의 적용범위조항 신설

'한-미 SOFA'에는 환경에 관한 명문규정이 전혀 없다. 따라서 한국 내에서의 모든 군사활동 및 계획과 관련하여 한국의 이익 특히 '환경보호이익'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한미 양당국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기지는 접수국 국내법의 적용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치외법권지역이 결코 아니며, 미군의 구성원, 군속 등은 한국영역안에서 한국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본협정의 정신에 위반되는 어떠한 활동도 삼가야 할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본

24) 국제법상의 상기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최승환,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전 게논문, 93~105쪽 참조

25) '1959년 서독보충협정'은 제53조 제32항에서 나토군당국은 독일당국이 '독일의 이익' (German interests)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기지내에서 취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3년에 개정된 서독보충협정(이하 '1993년 개정독일보충협정' 이라 약함)은 제53조 제1항을 개정하여 본협정과 기타 국제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와 군대와 군속 및 그 가족의 조직과 내부운영 및 관리에 관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기지의 사용에 있어 '독일법'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미국 및 한국환경법규의 적용성 여부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최승환, 상계 논문, 92~93쪽 참조

협정 제7조).<sup>25)</sup>

'1993년 개정독일보충협정'은 환경관련조항을 대폭 신설하였다. 예컨대 동 협정 제31조와 제32조에서 파견국은 독일내의 모든 군사활동과 관련하여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모든 계획의 '환경양립성' (environmental compatibility)을 조사하여 인간이나 동식물 및 문화재 등을 포함한 모든 환경자원에 대한 환경적으로 중요한 계획의 영향을 군대 및 군속당국이 확인 분석, 평가하도록 하는 규정(제54조A)과 독일환경법규에 따라 오염도가 낮은 연료, 윤활유, 첨가제를 항공기, 선박, 차량 운행시에 사용하도록 군대 및 군속당국이 보장하는 규정(제54조B)을 각각 신설하였다.

미국방부는 해외주둔기지에 대하여 미국환경법규와 접수국환경법규중 보다 엄격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채택해 왔으므로 그러한 정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미국정책에도 부합된다. 따라서 주한미군기지에 대해 미군당국이 1차적인 관리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기지주변의 환경을 오염시킬 경우 관련피해자나 한국정부는 "국제환경협약"<sup>26)</sup>이나 "한국환경법규"<sup>27)</sup>를 적용하거나 원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한다. 중대한 환경오염배출행위에 대해서는 한국환경법규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정명령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피해주민 역시 '한-미 SOFA'의 관련규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 (4) 배상금분담율의 개정

오늘날의 한미양국은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정식회원국으로서 정치와 경제 등 모든 분야에 있어 호혜주의에 입각한 대등하고 동반자적 관계에 입각해 있는데, 이는 주권평등원칙의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미군의 한국주둔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미양국의 상호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배상금분담율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공평하여야 할 것이다.

배상금분담율의 불형평성은 衡平性과 合理性原則에 따라 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해자측 당국이 원칙적으로 피해배상금을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쌍방이 피해에 대해 책임이 있을 경우 책임비율별로 피해배상금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형평하다고 본다. 책임비율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청구권조항에 따라 선출된 중재인이 산정하도록 한다.

#### (5) 민사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소송절차조항 신설

'한-미 SOFA'에는 미군이나 고용원에 대한 재판서류의 송달절차, 법정출석에 대한 보장, 판결집행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청구와 관련된 소송과 판결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節次規定을 마련하여야 한다. 따라서 미군이나 고용원에 대한 재판서류의 송달과 법정출석을 미군당국이 보장하고, 판결집행절차와 관련한 미군당국의 구체적인 협조의무를 규정한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특히 미군이나 고용원의 재산증 기장 실효성있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급여[보수]에 대해서도 強制執行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를 반드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1959년 서독보충협정'의 경우 파견국의 군인이나 고용원에게 지급되는 급여(payment)는 독일법원에 의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데(제34조 제3항), 급여가 독일당국에 의해 지급되는 경우에는 독일법의 범

26) 예컨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분규제에 관한 비준협약' 등.

27) 예컨대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등.

위내에서 급여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보수가 파견국정부에 의해 지급되는 경우 파견국의 군당국은 파견국의 관련법이 허용하는 한 독일집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독일집행기관에 요청서에 명시된 배상금을 예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5조).<sup>28)</sup>

그밖에도 동 협정은 非刑事事件에 관한 소장과 법원명령서 등의 전달(제32조), 판결과 결정 및 명령의 집행(제34조), 차압(제35조), 영장등의 송달(제36조), 법정 및 기타당국에의 출두(제37조), 정보의 공개(제38조) 등에 관한 자세한 절차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제34조는 파견국군당국은 독일법원 및 기타당국이 행한 비형사사건에서 선고된 판결, 결정, 명령 및 해결에의 복종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권한내의 모든 원조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7조는 파견국의 군인이나 군속이 독일법원이나 기타당국에 출두하도록 소환되는 경우 파견국군당국은 군사상의 긴급사태로 인하여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독일법상 출석이 강제되는 한 법원에의 출두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3년 개정독일보충협정'은 상기 절차규정을 다소 개정하였는데, 파견국이 지정한 간행물에 파견국 언어로 서류의 사본을 공표하는 경우에도 군인, 군속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서류송달(service of documents)의 효율이 발생하도록 한 규정(개정 제18조)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1959년 서독보충협정'과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sup>29)</sup>

## V. 끝말

1. "한국정부에 기지를 반환할 때 원상회복 및 보상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본협정 제4조 제1항은 기지 자체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기지주변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해서는 미군당국 또는 미국정부가 國家責任을 진다."

주한미군기지관련 환경오염피해는 기지내 오염과 기지주변의 오염으로 구분하여 법적 문제를 고찰하여야 한다. 본협정 제4조 1항은 시설과 구역 즉 기지를 한국정부에 반환할 때 원상회복 및 보상의무를 면제시켜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기지주변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미국정부의 국가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근거로 원용될 수 없다. 기지내에 대해서는 미군당국이 1차적인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1차적인 관리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기지주변의 환경을 오염시킬 경우 미국정부 또는 미군당국은 국가책임을 지게 된다.

- 2 "기지내의 '중대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해서도 미국정부는 국제법상 권리남용법리에 따라 국가책임을 진다."

본협정 제4조 제1항은 미군기지내의 환경오염에 대한 원상회복 및 보상의무면제를 규정한 근거조항으로 미국정부에 의해 원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타국에 대한 중대한 환경오염행위는 국제범죄에 해당되는 것이며 국제법상의 강행규범(jus cogens)을 위반한 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기지내의 중대한 환경

28) 파견국의 관련법이 상기절차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파견국 군대당국은 판결, 결정, 명령의 집행과 관련한 독일집행 당국의 협조요청에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5조 (b)~(ii).

29) '1959년 서독보충협정'은 비형사재판절차의 진행에 관련된 소장과 기타서류 및 법원명령서의 송달은 파견국이 설치하거나 지정한 연락기관(liaison agency)을 통하여 하였으며(제32조 1항), 군인과 군속 또는 그 가족에 대한 독일법원 및 당국의 송달은 공표(publication)와 광고(advertisement)에 의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하였다(제36조 1항).

오염피해에 대해서는 '권리남용법리'에 입각하여 미국정부의 국가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 오염도가 심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군당국이 기지내의 토양에 대해 손상을 가한 경우에는 한국정부는 미군당국이나 미국정부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손해보상/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3. "미군당국은 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구제수단을 제공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진다."

주한미군기지는 미군당국이 1차적 사용권 및 관리권을 갖고 있으므로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 한국정부는 초국경적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방지의무 및 국가책임의 법리를 적절히 원용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군당국은, 초국경적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국가의 방비의무에 따라, 주한미군기지내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으로 한국의 영역이나 재산 및 사람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히 배상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진다.

4. "미군이나 고용원에 의한 공무집행중의 행위로 야기된 환경오염피해에 대해 피해자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신청하거나 한국정부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배출로 인한 피해자의 법적 구제는 미군이나 고용원에 의한 공무집행 중의 행위와 비공무집행중의 행위로 구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공무집행중의 행위로 야기된 환경오염 피해자는 '한-미 SOFA' 규정(본협정 제23조 제5항)과 민사특별법(제2조)에 따라 한국정부를 상대로 國家賠償法 규정에 의해 국가배상을 신청하거나 한국정부를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미군이 점유,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과 기타 시설이나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국가배상법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5. 미군이나 고용원에 의한 비공무집행중의 행위로 야기된 환경오염피해에 대해 피해자가 미군이나 고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한국당국이 심사하고 배상액을 결정하여 미군당국에게 통보하면 미군당국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직접 지급한다. 다만 동 배상금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미군이나 고용원을 상대로 국내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영역내에서 불법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서 공무집행중에 행해진 것이 아닌 행위로부터 발생한 미군이나 고용원에 대한 청구권은 한국당국이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배상액을 산정해서 그 보고서를 미군당국에 통보하면 미군당국은 자체없이 배상금 지급의 제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급제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지급제의가 행해진 경우 청구인이 완전히 충족하는 것으로 이를 수락하는 때에는 미군당국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그 결정 및 금액을 한국당국에 통고한다(본협정 제23조 제6항 가, 나, 다). 청구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지급이 행해지지 못한 경우, 즉 미군당국이 지급하는 배상금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는 가해미군이나 고용원을 상대로 국내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동조 제6항 라). 비공무집행중의 행위로 야기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청구 역시 국가배상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민사특별법 제4조).

6.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오염배출로 피해를 입은 한국인은 상기 민사청구권조항에 따른 권리구제에 불복할 경우 미국연방법원에 미군당국 또는 미국정부를 상대로 국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인 피해자가 미국환경법상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연방지방법원은 미국국내법을 역외적으로 적용하여 미군당국으로 하여금 관련환경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하거나 배상금지급을 명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환경법이 초국경적 환경피해를 초래한 미국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판례법에 비추어 볼 때 긍정적이라 판단되나, 해외미군기지에 대해서는 미국환경법의 역외 적용을 부인한 사례가 있다.

7. "한-미 SOFA'의 개정시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미군당국의 국제법상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미군당국의 의무규정을 신설할 경우 협의 및 사전통보의무, 시설 및 구역에의 접근보장의무, 환경오염피해조사요청 허가의무, 환경오염관련자료의 제출의무, 환경오염규제 및 방지의무, 원상회복 및 손해보상/배상의무, 책임자처벌 및 재발방지보장, 피해배상청구에의 협조 등과 같은 미군당국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또한 주한미군기지에 대해 미군당국이 1차적인 관리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기지주변의 환경을 오염시킬 경우 관련피해자나 한국정부는 국제환경협약이나 국내환경법규를 원용하거나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한다.

8. "한-미 SOFA'의 개정시 환경보호에 관한 자세한 조항을 신설한다."

'한-미 SOFA'에는 환경관련규정이 없다. 따라서 한국 내에서의 모든 군사활동 및 계획과 관련하여 한국의 이익 특히 '환경보호이익'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한미 양당국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기지는 접수국 국내법의 적용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치외법권지역이 결코 아니며, 미군의 구성원, 군속 등은 한국영역안에서 한국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본협정의 정신에 위반되는 어떠한 활동도 삼가야 할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본협정 제7조).

9. "한-미 SOFA'의 개정시 민사청구와 관련된 소송과 판결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을 마련한다."

현 '한-미 SOFA' 체제하에서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해서는 본협정 제23조의 민사 청구권조항이 적용된다. 그러나 '한-미 SOFA'에는 미군이나 고용원에 대한 재판서류의 송달절차, 법정 출석에 대한 보장, 판결집행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민사청구와 관련된 소송과 판결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節次規定을 마련하여야 한다. 미군이나 고용원에 대한 재판서류의 송달과 법정출석을 미군당국이 보장하고, 판결집행절차와 관련한 미군당국의 구체적인 협조의무를 규정한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특히 미군이나 고용원의 재산중 가장 실효성있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급여[보수]에 대해서도 強制執行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를 반드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10. "주한미군기지와 관련된 환경오염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며, 군사용 유독 물질로 인한 오염피해의 방지는 회복할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구제방안의 개선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우호적인 한미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주한미군기지 주변의 환경오염문제는 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한-미 SOFA'의 제약과 한미 관계당국의 소극적 자세로 인해 아직까지 그 정확한 오염실태는 물론 피해방지와 사후 구제대책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신속한 법적구제와 보다 효과적인 환경보호를 위하여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피해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국제관습 법상의 제반권리를 명문화하여 미군당국의 구체적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분쟁방지 및 해결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法的 救濟方法을 마련하는 것은 환경오염피해자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보호는 물론 한미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대등한 한미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도 시급하다고 본다.

주한미군

① 95년 기준 부당금 3억만 달러  
개별 10%

미국이 조사한 서독 90년대 환경오염 정화비 30억 달러  
내 미군기지

한국 : 30조 원이 될지 2 이상이 될지 알 수 없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현행: 36조 1항 / 모든 국민은 건강한

↳ 정부의 의무 / 추구되며,

## 주한미군기지와 환경오염

# 미군기지 환경오염과 환경기준안 제 문제

녹색연합

1998. 7. 1

# 미군기지 환경오염과 환경기준안의 제 문제

녹색연합

## 목 차

- |                              |                        |
|------------------------------|------------------------|
| 1. 들어가며                      | 2. 주한미군의 환경기준안         |
| II. 환경기준안 마련에 대한 배경          | IV. 환경적 측면에서의 한미행정협정의  |
| III. 미군의 해외 주둔군 환경지침서와       | 문제                     |
| 주한 미군의 환경기준 안의 비교            | V. 주한 미군의 환경 기준에 대한 원칙 |
| 1. 미군의 해외주둔군 환경지침서(이하 환경지침서) | 과 기준                   |

## I. 들어가며

1998년 5월 9일 신문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자체 환경지침인 '주한 미군 환경기준' (ECS)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1945년 9월 8일 미24군단 예하의 2개 사단 병력이 하지 중장의 지휘하에 인천에 상륙한 후 일정하게 변화한 국제 정세를 반영하는 흔영할만한 사건이다. 이는 녹색연합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미군의 한국 주둔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을 지적해온 민간단체와 한-미간의 정상적인 관계를 요구해온 온 국민들의 지지지 않는 민족 자주권회복 운동의 결과물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한국주둔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해온 녹색연합은 몇가지 이번 미군의 조치에 대하여 '환경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한반도'를 위한 몇가지 확보해야 할 원칙과 주한 미군 환경기준안 마련에 대한 보안을 요구한다.

특히 한미행정협정(SOFA)에 의한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선례를 볼 때 이번 주한미군 환경기준은 마치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선처인양 하는 미군의 태도와 환경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한반도를 포기한 듯한 한국 정부의 협상자세는 이번 환경기준안 마련에 있어서도 여실히 들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

## II. 환경기준안 마련에 대한 배경

미군의 해외주둔은 세계 18개국 298개의 기지에 달한다. 이러한 미군의 해외 주둔은 주둔자로서 미군과 주둔지로서 각 국가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주둔은 세계

인류의 공동 파제인 환경과 인권문제에 있어서 많은 부작용과 문제를 노정시키고 있다. 한국의 경우 미군 주둔지 국가중 가장 많은 미군 기지가 있으며 이러한 한국적 현실은 한국에 있어서 미군에 의한 인권과 환경적인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97년 통계에 보면 한국에 있어서 45년 9월 8일 미군이 주둔한 이후 10만건이 넘는 미군범죄가 발생하였다. 97년 10월 현재까지 평균적으로 1~2%만이 한국법정에서 처벌을 받았으며 1967년~1987년까지 20년간 발생한 미군범죄는 총 39,452 건으로 하루 평균 5건, 연평균 2,200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미군 범죄에 가담한 미군은 총 45,183명이나 된다.<sup>1)</sup> 또한 98개의 미군기지에 의한 환경오염의 사례는 체계적으로 미군에 의한 환경오염문제가 문제가 된 1996년 이후 확인된 사고가 7건<sup>2)</sup>이며,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사항은 공군기지 주변 소음, 폭격장 주변 소음과 지하수 오염, 오페수 방출에 의한 수질오염, 미군기지 내 폐기물 처리에 따른 토양 오염 등이 있다.

이러한 미군주둔에 따른 환경파괴는 일상적이면서, 치명적으로 우리의 환경적으로 안전하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녹색연합을 포함한 한국의 민간단체들은 이러한 미군의 인권과 환경에 대한 조직적인 폭력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특히나 1996년 녹색연합과 우리땅 미군기지 되찾기 전국 공동대책위, 주한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는 전국 11개 지역 30여 미군기지에 대하여 기본적인 환경조사를 실시하여 보고한 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이후 열화우라늄탄 사고에 대한 규명 및 규탄, 백운산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규명 및 규탄 등 구체적인 활동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노력은 결국 미군으로 하여금 환경 기준안(ECS)을 미군이 발표하게 만들어낸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결국 이번 미군에 의한 환경기준안은 미군과 미국당국이 한국에 대한 환경적 이해와 필요성으로 작성되었다가 보다는 한국 국민의 지속적이고 강도 있는 문제제기와 실천의 성과물인 것이다. 그러기에 이번 환경기준에 녹색연합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한국민의 역사적 성과물인 환경기준이 기존의 미국과 한국 정부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듯이 완벽하지 못하고 미군의 자국군의 해외 주둔에 대한 합리성만을 보장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끝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 III. 미군의 해외 주둔군 환경지침서와 주한 미군의 환경기준 안의 비교

### 1. 미군의 해외주둔군 환경지침서(이하 환경지침서)

미군의 해외주둔군 환경지침서는 1992년 미국 국무성에 의해서 발표되었다. 미국방성 해외환경지침서 (Department of Defence Overseas Environmental Baseline Document - OEBDG)<sup>3)</sup>는 19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환경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이 지침서의 활용에 대한 원칙이 규정되어 있는데 대략 이 자신들의 환경지침서의 지위와 역할을 아래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본 미국방성 해외환경지침서(OEBDG)』는 미국 영토밖의 미군 해외주둔지에서의 미국방성 환경지침 및 절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 주한미군범죄백서, 『민족의 주인됨을 위하여』 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한 운동본부, 1997

2) 매향리소음 소송, 백운산 기름유출사고, 수락산 낙서, 하남시 기름유출사건, 포항 기름유출사건, 열화우라늄탄 사건, 의정부 폐기물 무단 투기 사건, 등

3) Overseas Environmental Baseline Guidance Document 1992 미국무성

본 지침서는 미국방장관의 지명을 받은 환경관리관이 주요 미군 주둔지가 있는 주둔국에서 사용한다. 본 지침서는 환경담당관이 주둔국에서의 '최종환경이행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미국방성 특별 환경기준을 포함한다. 주둔국의 법률이나 기본권 또는 한미행정협정(SOFA), 기타 국제법 및 국제적 관행과 상충되지 않는 한, 주둔국의 환경지침이 부재하거나 적용할 수 없을 경우, 혹은 본 지침서보다 주재국 인간건강과 자연환경 보호 기준이 미달할 경우 본 지침서가 적용된다.

이 지침서의 지위와 역할을 보면 몇가지 확인되는 원칙이 있다.

첫째, 미군의 특별환경기준을 기본으로 한다.

둘째, 주군지(국가)의 환경기준과 비교하였을 때 우위에 있는 환경기준을 적용한다.

셋째, 국제법과 국제적 관행이 우선한다.

넷째, 한미행정협정(SOFA)이 이 환경지침보다 우위에 있다.

이러한 원칙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한미행정협정(SOFA)이 환경지침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결국 한미행정협정에 의해서 위의 환경지침의 적용과 활용이 규정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미행정협정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각 나라와 미군은 일반적으로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러한 한미행정협정을 한시적으로 효력기간을 규정하고 있어서 협상과 조정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 그럼에도 한미행정협정은 그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서 미국이 행정협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한 무한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미행정협정상의 환경 문제는 이후에 기술하도록 한다.

## 2. 주한미군의 환경기준안

① 예외 조항이 너무 많다.  
② 기준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주한미군 환경기준안의 목적과 실행 기준을 확인함으로써 본 기준안의 성격과 위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주한미군 환경기준안에 있는 목적과 실행원칙을 간략하게 서술한다.

주한미군 환경기준의 목적은 주한미군에게 세부적인 환경보존 기준을 제공함에 있으며, 이 기준들의 제공 정의는 주한미군 재정이 허락하는 한 환경보존에 최대한 부합하게 하는데 있다. 본서는

- ① 1996년 2월 24일 제작된 미국방서의 4715.1 지령
- ② 92년 10월에 제작된 해외에서의 환경보존 기본 지침서
- ③ 96년 4월 22일 제작된 국방부 지령번호 4715.5 : 78년 10월 13일 제작된 해외 파견시설의 환경기준준수 관리 및 추가 행정명령 12088의 내용을 실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실행서에 의하면 우선 주한미군 환경기준안은 주한미군이 관리 또는 조정하는 시설에 적용되며 이 기준은 군함, 비행기, 기타 미군시설외에서 행해지는 작전이나, 훈련에는 적용되지 않게 되어 있다.<sup>4)</sup> 정확히 표현하면 환경기준안의 일정한 기준들이 미군이 주둔하면서 일상적으로 발생시키는 오염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지만 훈련 등 군사작전에 들어가는 오염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주한미군 환경기준안은 ① 국제협약과 국방성 정책과 명령에 부합하는 미군의 전함, 항모, 비행기와 ② 대통령의 직접명령하에 있는 핵관련 프로그램 ③ 과거 미군의 활동에 의해 오염된 환경의 정화활동의 결정과 실행에 대해서는 이번 기준안에 의한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주한미군 환경기준에 주목하는 내용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의 환경관련 법정 규정은 한

국의 어떠한 환경법이나 규범이 아닌 환경기준안에 의해서만 규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환경기준 안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로 ① 군사작전에 막대한 어려움을 줄 때 ② 한국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줄 때 ③ 복구작업 등에 필요한 막대한 금액이나 자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지 않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해외에 주둔한 미군의 주둔비는 미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적자임을 강조함으로서 환경복원 비용이 현재 확보될 수 있는가와 환경 보전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환경복구가 불가능하게 할 수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

## IV. 환경적 측면에서의 한미행정협정의 문제

우선 한미행정협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정협정의 근거인 한미상호방위 조약을 이해해야 한다. 한미상호방위 조약 제 4조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대한민국은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허여하며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표현되어 있다. 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 지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이를 일반적으로 한미행정협정으로 표현한다. 이 한미행정협정에서 환경과 관련하여 기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조 시설과 구역 - 공여

1. (가) 합중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 개개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제 협정은 본 협정 제28조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양 정부가 이를 체결하여야 한다. 시설과 구역은 소재 여하를 불문하고 그 시설과 구역의 운영에 사용되는 현존의 설비, 비품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 제3조 시설과 구역 - 보완조치

1. 합중국은 시설과 구역 안에서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군대의 지원, 경호 및 관리를 위하여 동 시설과 구역에의 합중국 군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합중국 군대의 요청과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정부간의 협의에 따라 동 시설과 구역에 인접한 또는 그 주변의 토지, 영해 및 영공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합중국은 또한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정부간의 협의에 따라 전기의 목적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4조 시설과 구역 - 시설의 반환

1.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를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의 시설과 구역의 반환에 있어 동 시설과 구역에 가해진 개량에 대하여 합중국 정부에 어떠한 보상도 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4) 주한미군 환경 기준안. 1998 서문 1-2 지침서 실용에 따른 예외 조항

5) 한미주둔군지위협정과 환경오염의 구제. 성재호 (성균관대 법과대학 교수, 주한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한미행정협정 개정위원). 1996 미군기지 환경조사 보고서 발제문

이상의 규정들이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언급할 수 있는 SOFA 조항들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SOFA상에는 환경에 관한 직접적 규정은 없고, 다만 제3조에서 '시설과 구역 안에서 시설과 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한미간에 합동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를 합동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뿐이다. 동 규정에 따라 합동위원회는 현재 1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고, 그 중의 하나로 환경문제를 다루는 위원회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조약상으로는 현안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측 위원과 미군측 위원이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유일한 해법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오염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이에 대한 시정에 관한 문제는 SOFA 개정 과정에서 환경관련 규정을 신설하도록 합의를 도출하는 수 밖에 없다. 현재까지의 논의경과를 보면 우리측의 환경문제 요구는 미국측에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SOFA 개정시 환경보호를 위한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충분히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SOFA상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또 한가지 지적되어야 하는 것은 오염된 미군사용 시설이나 구역의 원상회복 문제라 할 수 있다. 제4조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군측이 공여된 시설과 구역을 반환하는 경우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다. 따라서 동 협정으로는 환경오염이 누적된 미군 이용 시설이 우리에게 되돌아올 때에 우리나라에는 아무런 배상이나 보상요구도 취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원상회복을 요구하지 않도록 한 배경이 미군측의改良에 따른相對的의 意味를 예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환경오염의 구제는 장기의 시일을 요할 뿐만 아니라, 구제 비용도 오염원인 행위보다 과중한 것이 일반적인 것이므로, 동 규정의 엄격한 해석과 적용은 동 조항의 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점에서 SOFA는 환경문제를 접근하기에는 본질적 한계를 안고 있고, 현재 한미간에는 동 협정을 개정하는데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단계이므로, 여타의 조항에 대한 개정 작업과 함께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 V. 주한 미군의 환경 기준에 대한 원칙과 기준

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안전하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이는 군사적 대치상태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지켜져야 할 세계인류의 미래를 위한 보장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 미군의 한국 주둔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 하는 것과 함께 한국과 미국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정상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①

이를 위해서 환경기준의 내용과 관계없이 지켜져야 할 원칙이 있다.

첫째, 한국의 환경법과 미국의 환경지침 중 가장 우위의 환경규범이 환경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는 미국 국무성의 해외주둔군 환경지침서에서 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필리핀의 경우 미군이 철수하면서 필리핀의 환경법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미국의 환경오염 책임을 회피한 선례를 보아 한국에서의 환경기준은 우위의 환경규범을 중심으로 하는 원칙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원인사상

둘째, 주한미군 주둔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환경오염 실태 조사가 한국 정부와 미군 당국, 해당 지역주민, 한국의 민간단체 및 전문가에 의해서 공동으로 또한 정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지역주민들이며 더불어 주둔한 미군이 철수한 이후 오염된 환경 속에 생존해야 할 주체도 주둔지역(국가) 주민들이다. 이에 주둔지역 주민들이 주둔한 미군의 환경관리

및 환경오염원을 조사하는 것은 국제적 규범에 적합한 것이며 이는 세계환경회의에서도 선언했듯이 지역주민의 참여만이 안정적인 환경보전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환경 자체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미군은 기존의 환경문제와 환경오염의 의혹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환경오염을 조사하고 있음을 몇 번이고 천명한 바 있다. 이를 적극 수용하더라도 기존의 주둔지역 환경오염의 흐름을 알아야 오염 해결방안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군의 그동안 독자적으로 조사한 환경오염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③ 지속 가능한 원칙

넷째, 한미행정 협정상 원상복구의 의무가 없음으로 우선 한미행정 협정상의 원상복구의 의무가 주어져야 한다. ④ 정부 주체로 환경오염 원칙

환경오염의 복원은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투여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오염은 특성상 오염자가 오염된 환경을 복구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특히, 세계각국의 사례를 볼 때 미군이 철수한 후 오염된 환경을 방치함으로 지역주민들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를 원칙적으로 막기 위하여 오염자가 오염을 복구하는 의무를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다섯째, 오염된 환경의 원상복구를 위해서 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사용자측 부담의 원칙이 확보되어야 한다.

한미행정 협정상 한국이 미군의 주둔비 일부를 대고 있으며, 특히나 한화로 지불되는 비용을 중심으로 한국정부가 미군주둔비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환경복구 비용의 경우 환경복구 의무자는 미군이더라도 실행자가 한국의 기업이나 민간인인 경우는 한화로 비용이 지불되고 이에 대한 자금 지원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게 되었다. 또한 많은 사례가 그려왔다. 이에 오염자가 환경 복구비를 제공하는 것은 환경 도덕적으로 합리적이며 미군의 반환경도덕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환경복구비 부담의 원칙이 확보되어야 한다.

여섯째, 기존 미군에 일방적인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미군의 사과와 보상이 보장되어야 한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지 54년이 되었다. 오랜기간 동안 미군의 환경오염에 의해서 직간접적으로 생명과 건강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이 있어야 한다. 공군기지 주변 주민들은 난청과 심장질환, 전투부대 지역 주민들은 전투훈련시 느끼는 생명의 위험에 대한 충격 등이 일상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에 대하여 한국정부와 미군 당국은 적절한 배상과 인격적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 정부의 후진적인 환경영책이 개선되어야 한다.

## ■ 미군의 환경오염 사례에 대한 자료

### 1. 소음에 의한 오염

| 측정 장소                 | 등가소음도 | 최고소음도 | 소음 원   | 비 고<br>(순간 최고소음) | 단위: dB(A) |
|-----------------------|-------|-------|--------|------------------|-----------|
| 의정부<br>(camp stanley) | 74.0  | 78.4  | 헬기소음   | 81.4             |           |
| 춘 전                   | 71.1  | 82.0  | 헬기소음   | 89.3             |           |
| 인 천                   | 63.9  | 68.8  | 공장가동소음 | 68.8             |           |
| 평 택                   | 81.4  | 96.0  | 제트기소음  | 112.0            |           |
| 군 산                   | 83.6  | 94.0  | 제트기소음  | 107.0            |           |
| 대 구                   | 87.8  | 99.2  | 제트기소음  | 118.3            |           |
| 대 구                   | 81.2  | 87.4  | 헬기소음   | 88.2             |           |
| 부 산                   | 66.7  | 78.4  | 장비가동소음 | 78.6             |           |

환경소음 기준치<sup>6)</sup>

| 지역구분  | 적용 대상지역  | 기 준              |                  |
|---|----------|------------------|------------------|
|   |          | 낮(06:00 - 22:00) | 밤(22:00 - 06:00) |
| 자연환경보존지역, 관광휴양지역 및 취락지역(주거지구, 녹지지역, 주거전용지역,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에서 50M 이내 지역) |          | 50               | 40               |
| 취락지역 중 주거지구 이외의 지구,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          | 55               | 45               |
| 도로변지역   | 일반지역과 동일 | 65               | 55               |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sup>7)</sup>

| 소음도(dB) | 소음수준      | 영 향               |
|---------|-----------|-------------------|
| 60      | 탈수기 작동    | 식욕감퇴 · 수면장애       |
| 70      | 욕조 물받는 소리 | 혈압상승 · 집중력저하      |
| 75      | 오토바이 소음   | 원활한 대화 · 전화통화 불가능 |
| 80      | 고양이 울음    | 소화불량 · 피로감 · 불쾌감  |
| 85      | 피아노 소음    | 심장기능저하 · 평형력 교란   |
| 90      | 개짖는 소리    | 청력장애 · 귀울림 · 두통   |

6) 소음진동학, 도서출판 동화기술, 1995

7) 중앙일보, 98년 6월 3일

## 2 동두천시 미2사단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신문보도

한겨레 신문 98. 3. 18

# “미국인 토건부과장 불법매립 지시”

미군 시설공병대 환경과장 “80년부터 폐기물 묻어”

속보·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미군 제2사단의 건축폐기물 불법매립은 미군 시설공병대 소속 미국인 토간부 과장이 시장에 미리 한·미 군속 간부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증언이 외보였다.

외침부경찰사는 19일 시설공병대 소속 환경과장 이우희(46)씨로부터 “도로변·지입면적 이영해(61)씨가 토간부 과장의 지시를 받아 시설공병대 소유 농도지와 덤프트럭 등을 이용해 지난 80년부터 미사나 체육

관 등 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콘크리트, 베이스콘, 우레탄 등 건축폐기물을 미군부대에 아산과 하천 등에 몰래 묻거나 버려왔다”는 자백을 받았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침부경찰사는 미8군 헌병대의 협조를 얻어 20일 시설공병대 소속 환경과장 이우희(46)씨로부터 “도로변·지입면적 이영해(61)씨가 토간부 과장의 지시를 받아 시설공병대 소유 농도지와 덤프트럭 등을 이용해 지난 80년부터 미사나 체육

관에서 일하고 직방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리사실이 단 헌차례반 기록에 있는데다 현장조사 결과 매립 현장에 많은 양의 석면조각들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 특정폐기물 석면의 불법매립 여부도 조사중이다.

현원 외침부경찰사는 19일 전날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국동면 한신 우방 신성 경남건설 등 4개업체를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상영 기자

# 미군부대 건축폐기물 야산에 불법매립

동두천 2사단 7년간 수십만톤 추정…사·경찰 조사요구도 무시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미군 제2사단에 일내 긴축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폐 이스콘, 폰크리트 등 건축폐기물과 우레탄, 석면 등 폭진 폐기물 수십만t(을 무게인 약 30만t)를 하천 등에 폐밀로 묻거나 비린 시설이 밝혀졌다.

17일 외침부경찰서의 동두천시에 따르면, 미군 2사단은 국내 7개 유명 긴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긴축공사를 하면서 시설공병대의 뭉인 아래 지난 7년 동안 엔에디(NND) 가스체리 허증현장 부근 야산 등 쓰레기 뿌기 금지지역에 건축폐기물과 폭침폐기물을 폐밀 매립하거나 박차해왔다.

이와 관련해 외침부경찰사는 이날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미군 시설공병대 한국인 군속반장 이아무개(61)씨 군속임무를 신체했으나 ‘수사 보감’

을 이유로 외침부지청에 의해 기거했다.

이에 앞서 동두천시는 지난 19일 밤제한 시장 명의로 불법매립 진상조사 및 관계자 처벌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악성민사에게 전달했다. 외침부지도 2사단장에게 전달했다. 외침부지도 같은 날 미 2사단에 공문을 보내 시설공병대의 긴축폐기물 불법매립 일부를 비롯해 미군 담당과 한국 건설업체 사이의 결탁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미군측은 이런 요청에 적절히 응하지 않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동두천민주시민회(사무국장 강홍구)와 주한미군비전근절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선 목사)는 17일 성명을 내어 “8000~1만여평의 미군 범지

정상영 기자



## 미군부대 기름유출 농경오염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산곡천과 이 일대 농경지를 수년째 오염시켜온 기름이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돼 시와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7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 91년부터 하산곡동 산곡천과 이 일대 논과 밭 1만여㏊에 불순물이 섞인 경유가 흘러들어 농작물이 죽는 등 주민피해가 커 그동안 모두 16차례에 걸친 기름유출 진원지 조사작업을 벌였으나 실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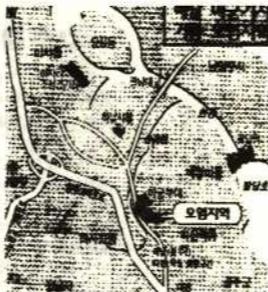
그러나 시는 지난 6일 하남~광주간 43번국도 확장공사에 따라 미군부대 정문 앞에서 하수관 공사를 하던 도중 오염지 인근에 있는 미군부대쪽 절개지에서 다량의 기름이 베어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날 발견된 기름은 절개지에서 폭40m가량으로 넓게 확산돼 땅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시는 이곳에서 흘러나온 기름을 거두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해 기름이 그동안 농경지를 오염시켜온 것으로 확인될 경우 미군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미군부대 안에 있는 기름탱크나 배관로에서 기름이 새어나온 것으로 추정돼 미군측에 합동조사를 했지만 미군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남/김기성기자



### 7. 군부대 환경오염 신문보도

## 군부대 환경오염 '중증'

맹독중금속 다량검출…지하수 발암물질도

### 국방부 종합대책 마련키로

전국 군부대의 토양과 지하수 오·폐수에서 맹독성·중금속인 납·카드뮴 등이 다량 검출되는 등 군부대의 오염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부 지하수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벤젠이 기준치의 6배 가까이 검출돼 충격적이다.

이런 사실은 국방부와 환경부가 지난 95년부터 약 1년6개월 동안 전국 31개 부대 60개 단위부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분야별 환경오염실태 조사결과 드러났다.

그동안 군부대의 오염이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는 계속돼 왔지만, 오염실태가 전국 규모로 조사돼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조사가 오염 가능성에 높은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실시되긴 했지만, 조사결과 나타난 오염 정도와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군부대 오염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각 지역에서 토양과 수질 380점을 체취해 분석한

<군부대 오염실태>

| 유류저장시설  | 107 | 유류검출 90(84.1%)<br>기준초과 27(25.2%) |
|---------|-----|----------------------------------|
| 폐기물폐립지  | 34  | 3(8.8%) 납, 카드뮴, 페놀               |
| 사적장     | 19  | 11(57.9%) 카드뮴, 구리, 납             |
| 원주로     | 13  | 0                                |
| 린비동 애재점 | 6   | 3(50%) 구리, 납, 수은                 |
| 지하수     | 8   | 1(12.5%) 벤젠                      |
| 오·폐수    | 59  | 35(59.3%) BOD, 부유물질              |
| 수질      | 31  | 12(38.7%) pH, BOD, COD, 부유물질, 유류 |
| 기체      | 9   | 4(44.4%) 납, 카드뮴, 6기크론            |

6배 가까운 58ppm 검출되기도 했다. 조사보고서는 "임각 군부대 오염의 원인으로 △환경관련 지휘체계가 갖춰지지 않고 △예산부족으로 방지시설 투자가 적으며 △기존 시설조차 적절히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

결과 오·폐수의 방류수 기준 초과가 47건, 시격장 및 유류시설의 중금속 기준 초과가 38건이었다.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은 주로 납·카드뮴·페놀·구리·수은·6기크론 등 맹독성이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납이 기준치(농경지 3㎎/ppm, 공장·산업지역 1㎎/ppm)의 20배가 넘는 20㎎/ppm 가량 검출돼 군부대 토양오염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줬다.

또 조사대상인 8곳의 지하수 가운데 1곳에서는 백혈병을 유발해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벤젠이 기준치(10ppm)의

김도형 정평섭 기자

### 참고자료

## 미국방성 해외환경지침서 미군기지 환경오염 사례

(1) 매항리 미공군사격장

☞ 외국승소사례

(2) 동두천 미2사단 건축폐기물 부대내 불법매립

(3) 유린당한 수락산바위

(4) 미8군 메디슨 통신부대 의왕시 백운산 기름 유출

# 미국방성 해외환경지침서

Department of Defence

Overseas Environmental Baseline Guidance Document (OEBDG)

1992년 10월판

## 1. 개관 (1장 OVERVIEW)

### 가. 개요 (EXECUTIVE SUMMARY)

본 美국방성 해외환경지침서(OEBDG)는 美國영토 밖의 미군 해외주둔지에서의 美국방성 환경지침 및 절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본지침서는 美국방장관의 지명을 받은 環境擔當官(the Executive Agent)이 주요 미군주둔지가 있는 주둔국(host nation)에서 사용한다. 본지침서는 환경담당관이 주둔국에서의 '최종환경이행표준' (final governing standards)을 제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미국방성 특별환경기준을 포함한다. 주둔국의 법률이나 기본권 또는 행정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s:SOFAs), 기타 국제법 및 국제적 관행과 상충되지 않는 한, 주둔국의 환경지침이 부재하거나 적용할 수 없을 경우, 혹은 본지침서보다 주재국의 인간건강과 자연환경 보호기준이 미달할 경우에도 본 지침서가 적용된다. (1쪽)

### 나. 전략 (STRATEGY)

....환경담당관은 주둔국의 환경법률 및 주재국에 관련 국제협정의 최신 사본을 비치하고 있어야 한다..... (10쪽)

### 다. 환경담당관의 역할 (EXECUTIVE AGENTS WILL) (11쪽)

- 환경담당관은 주둔국의 국가환경기준(지방자치단체 포함)을 숙지하여 주둔지에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주재국의 환경문서와 기준, 규정을 비치하여야 한다.
- 주둔국의 법률 및 기본권 협정, 행정협정(SOFAs)을 여타 국제협정과 함께 고려하도록 한다.
- 주재국의 환경이행기록/연혁을 공공 및 민간부분에 반하는 활동과 연관하여 점검하고 해당국의 특수한 환경정책 추세를 모니터한다.
- 시설의 건설 및 운용상의 책임이 미국이나 주재국에 기재되는지의 여부를 고려한다.
- 주둔국의 환경기준으로서 주둔국 기준과 미국방성 지침 중 어느편이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 결정한다.

f. 최종환경이행표준(the final governing standards)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둔국에서 활동하는 미국외교부와 지구통합사령부, DLA를 포함한 여타 미국방성 유관 부처와 협의하도록 한다.

h. 최종환경이행표준을 매년 갱신한다.

k. 통합사령부의 면제허가를 얻지 않는 한, 적어도 본 지침서(OEBDG) 출간 12개월 이내에 최종 환경표준 발효날짜를 결정지어야 한다.

### 라. 이행(IMPLEMENTATION)

환경담당관은 최종 환경이행표준을 주둔국의 주요부대단위까지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美국방부 부대와 주요 사령부 및 부대들은 본 최종표준보다 더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보충기준을 제정할 수도 있으며, 주둔국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한편, 최종표준에서 비롯될 모든 상황변수를 명확히 하도록 한다. (13쪽)

### 마. 면제조항(WAIVERS)

특정주둔지 혹은 시설에 대한 최종환경이행표준이 그 운용상 심각하게 불공정하거나, 또는 주둔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과도한 추가경비지출을 요할 경우, Military Department or Defense Agency는 환경담당관 (Executive Agent)에게 특정표준이나 지침으로부터의 면제여부를 의뢰하도록 한다..... 이러한 면제조치가 주둔국 표준과 연관될 경우, 환경담당관은 적절한 미국외교부를 통해 책임있는 주둔국의 관계당국(responsible host nation authority)과 협의하여야(shall consult) 한다..... (15쪽)

## 2. 폐수 (4장 Wastewater: 57-72쪽)

### 가. 미군의 폐수관련 환경기준

#### 1. 용어 정의

7일 평균치 (7-day average) : 연7일간 채집된 샘플의 오염평균치

30일 평균치 (30-day average) : 연속 30일간 수집된 샘플의 오염평균치

BOD<sub>5</sub> : 5일간 측정한 BOD

CBOD<sub>5</sub> : 5일간 측정한 CBOD (carbonaceous biochemical oxygen demand)

재래 오염원 (conventional pollutants) : BOD, TSS, 유류 및 윤활유, 배설물대장균,

pH

DWPT (domestic wastewater treatment plant) : 가정폐수 처리시설

IWPT (industrial wastewater treatment plant) : 산업폐수 처리시설

TSS (total suspended solids) : 漂浮고형물 총량 : 필터로 걸러지는 漂浮

고체물 총량 측정치

TTO (total toxic organics) : 종합 유독성 유기물질 : 도표4-1의 TTO중

0.01 mg/L를 초과하는 총량치

주의: 처리용 저수지등을 포함, 본 장의 규정에 맞춰 건설된 정수처리시스템은 주둔국의 물(水)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예외는 오직 본래부터 주둔국의 수자원이 아니었거나, 혹은 주둔국 수자원의 담수로부터 발생하지 않은, 사람이 발생시킨 물(수질)에만 적용된다.

## 2. 신규수질오염원에 대한 기준 (60쪽 참조)

- 1)  $BOD_5$ : 30일 평균치는  $30 \text{ mg/L}$ , 7일 평균치는  $45 \text{ mg/L}$ 를 초과할 수 없다.
- 2) 환경담당관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BOD_5$ 를  $CBOD_5$ 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런 경우  $CBOD_5$ 의 30일 평균치는  $25 \text{ mg/L}$ , 7일 평균치는  $40 \text{ mg/L}$ 를 초과할 수 없다.

## 3. 기존 수질오염원에 대한 기준(61쪽 참조)

- 1)  $BOD_5$ : 30일 평균치는  $45 \text{ mg/L}$ , 7일 평균은  $65 \text{ mg/L}$ 를 초과할 수 없다.
- 2) TSS: 30일 평균치는  $45 \text{ mg/L}$ , 7일 평균은  $65 \text{ mg/L}$ 를 초과할 수 없다.
- 3) pH: 流出水의 pH는  $6.0 - 9.0$  사이를 유지해야 한다.

4. 감시: 모든 시설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빈도는 도표4-2에 따라 세가지 기준( $BOD_5$ , TSS, pH) 모두에 대해 샘플링과 분석 실시. (참조 도표 4-1, 4-2)

## 5. 폐수의 방류

- 1) 유출물 제한: 폐쇄시 섭씨  $60^\circ\text{C}$  이하에서 발화하는 폐수의 방류는 금지된다. 알콜 24% 이상 함유 및 발화점이 섭씨  $60^\circ\text{C}$  이하인 액체 폐수는 방류가 금지된다.

6. 불만 처리시스템 (Complaint system): 개인이나 주둔국의 수질 관계당국으로부터 제기되는 수질오염에 대한 불만을 조사할 체계를, 환경담당관을 포함하여 적절하게 설치하도록 한다.

## 7. 신규 및 기존 오폐수 방출기준

### 1) 일일 평균 38,000리터 (일당 10,000갤런) 이하의 폐수 직간접 방류시

| 오염물질          | 일일최대량<br>(mg/L) | 4일간평균치<br>(mg/L) |
|---------------|-----------------|------------------|
| 시안화물(cyanide) | 5.0             | 2.7              |
| 납             | 0.6             | 0.4              |
| 카드뮴           | 1.2             | 0.7              |
| 종합유독성 유기물     | 4.57            | 10.0             |

### 2) 일일평균 38,000리터 (일당 10,000갤런) 이상의 폐수 직간접 방류시

| 오염물질      | 일일최대량<br>(mg/L) | 4일간평균치<br>(mg/L) |
|-----------|-----------------|------------------|
| 시안화물      | 1.9             | 1.0              |
| 구리        | 4.5             | 2.7              |
| 니켈        | 4.1             | 2.6              |
| 크롬        | 7.0             | 4.0              |
| 아연        | 4.2             | 2.6              |
| 납         | 0.6             | 0.4              |
| 카드뮴       | 1.2             | 0.7              |
| 전체 중금속    | 10.5            | 6.5              |
| 전체 유독성유기물 | 2.13            | —                |

8. 찌꺼기(침전물:sludge) 분해: 폐수처리 과정중 발생한 모든 찌꺼기는 제6장 유해폐기물, 제7장 고형폐기물 항목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 3. 유해물질 (제5장 Hazardous Material: 73-78쪽)

### 1. 정의

유해물질의 정의: 도표5-1 (78쪽) 및 부록A의 A.3. (191-243쪽) 참조.  
화약류 제외.

유해물 정보처리시스템 (HMIS: hazardous material information system): 美국방부에서 쓰이는 유해물질에 대한 중요정보를 축적, 보존, 보급시키기 위한 컴퓨터화된 정보처리 시스템

### 2. 유해물질 및 그 폐기처리는 그 유해한 성격상 주둔국의 규제를 받는다.

(도표5-1의 II항: 78쪽)

## 4. 유해 폐기물 (제6장 Hazardous Waste: 79-100쪽)

### 1. 정의

1) 유해폐기물에 대한 정의: 부록A.3. (191-243쪽)에 실린 폐기물중 "P" 또는 "H"가 폐기물 번호앞에 붙여진 물질

2) 유해폐기물 저장처(HWAP: hazardous waste accumulation point) : 유해폐기물 저장소 (HWSA)에 가기 전에 임시저장하는 곳으로 206리터(55갤런)까지 또는 극성 유해폐기물일 경우 1리터(쿼트)까지 보관할 수 있다.

3) 유해폐기물 저장소 (HWSA: hazardous waste accumulation area) : 206리터 이상의 일반 유해폐기물 또는 1리터이상의 극성 유해폐기물을 처리용 운반, 이전에 집적 저장해두는 장소

4) 유해폐기물 산출 (hazardous waste generation) : 본 문서에 기록된 유해물질을 산출하는 행위 또는 과정.

5) 유해폐기물저장소 관리자 (HWSA manager) : HWSA를 관리책임을 진 개인 혹은 관리처(agency)

6) 재처리, 저장 및 처분시설 (TSDF: treatment, storage, and disposal facility) : 미군주둔지가 아닌곳에 위치한 유해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처리, 저장 및 최종처분 시설을 의미한다.

7) 특수 식별번호 (unique identification number) : 유해폐기물 발생처에 부여된 독특한 고유번호로 그 발생에서부터 최종처리시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해준다. 식별번호로 UIC (unit identification code)나 DODAAC 방법중 어느 쪽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환경담당관(Executive Agent)이 결정하도록 한다.

## 2. 기록관리방법 (recordkeeping)에 관한 규정 (89쪽 참조)

1) 유해폐기물 일지 (hazardous waste log) : 유해폐기물名 및 발생장소/ 유해폐기물의 성격과 위험등급/ 저장용기의 번호 및 종류/ 유해폐기물의量 / 저장일자/ 저장장소/ 처리날짜 (도착, 봉함, 운반 및 운반기구 사용일자 포함)

2) 유해폐기물일지는 주둔기지 폐쇄시까지 보관한다.

3) 점검일지 (inspection log) : HWSA 및 HWSP의 유해폐기물 점검일지는 3년간 보존한다.

4) 적하목록 (manifests) : 오고 간 유해폐기물 관련 송장 (manifest)은 3년간 보관한다.

5) 폐기물 분석/유형분류 기록 (waste analysis/characterization)은 폐기물 처리장 폐쇄후 3년까지 보존한다.

6) 폐쇄계획(closure plan) : 폐쇄계획은 새로운 HWSA가 가동되기 이전에 세우도록 한다. 물론 기존의 각 HWSA도 폐쇄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3. 유해폐기물의 처리 : 美국방성 각 군들은 군 활동중 발생, 미국법 또는 주둔국 법에 의해 유해한 것으로 인정된 유해폐기물들이 최종처리표준(final governing standards) 및 다음지침에 따라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주둔국내에서 처분되지 않도록 보장(must ensure)해야 한다. (96쪽 2번 참조)

4. 미군이 발생시킨 폐기물(TDSF)의 저장, 처리, 폐기 시설은 주재국 당국의 규정에 따라 주재국의 평가와 승인을 필요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 및 승인은 적법한 허가 또는 주둔국의 적절한 조치를 의미할 수도 있다.

## 5. 고형폐기물 (7장 Solid Waste: 101-109쪽)

1) "A급" (class A) 및 "B급" (class B)으로 폐기물하적을 분류

2) A급 고형폐기물 하적률은 60%까지 퇴적이 진행되어야 한다. 전조 상태에서 퀸로그램 당 허용가능한 평균오염치는 밀리그램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     |       |
|-----|-------|
| PCB | 1     |
| 카드뮴 | 10    |
| 크롬  | 1,000 |
| 구리  | 500   |
| 납   | 500   |
| 수은  | 5     |
| 니켈  | 100   |
| 아연  | 1,000 |

3) B급은 A급에 해당되지 않는 폐기물 하적률에 적용된다.

## 6. 유류 및 윤활류 : 폐유기용제 (9장 Petroleum Oil and Lubricants : 117-120쪽)

부록A의 A-1에 명기된 유해물질 발생시 본 문서 <제6장: 유해폐기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 7. 부록 : 유해폐기물의 성격과 유해폐기물 및 유해물질 목록

# 미군기지 환경오염 사례

## (1) 매향리 미공군사격장

### ■ 개관

매향리 미공군사격장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일대의 연안 해역과 해안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사격장은 해안으로부터 1.6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농섬을 중심으로 한 반경 8,000 피트내의 500만평에 달하는 해상사격장과 이에 접속된 50만평 규모의 해안지역에 설치된 육지사격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 ■ 경제적 피해

매향리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사격장 조성 당시 500만평 연안의 황금어장과 50만평의 농경지 및 임야를 징발당함으로써 싫기에도 못미치는 징발 보상금 지급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다. 또한 어장 상실로 인한 어획량 감소와 경지면적의 축소로 인한 농업소득의 감소로 만성적인 경제적 궁핍을 겪고 있다. 1968년 징발 당시 주민들은 사격장 지역으로 편입된 연안 어장에서 연평균 2,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으나 당시의 어업권에 대한 징발보상액은 총액 1,000만원이었고, 농경지는 당시 싫기의 3분의 1 가격으로 징발되었다. 즉 68년 당시 평당 500원 내지 600원의 농경지가 평당 180원 내지 230원에 징발되었다고 한다.

### ■ 구체적 피해사례

#### 1) 오폭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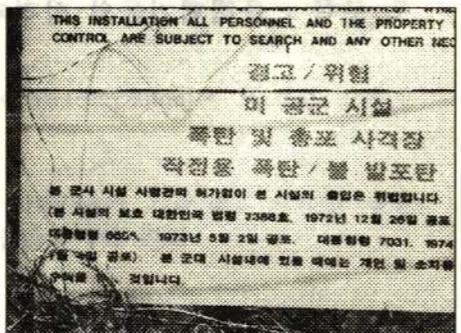
1951년 미군의 사격연습이 시작된 이후 현재에까지 오폭사고와 불발탄으로 인한 폭발사고 등은 종종 발생하여 왔으나 1989년과 1995년에 소액의 배상이 실시되었을 뿐이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격장 설치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폭으로 인하여 직접 사망한 주민, 불발탄으로 인하여 사망한 주민, 오폭으로 상해를 입은 주민이 상당수에 이른다고 한다.

### ■ 사건 일지

1952년 : 주민 전상복씨가 신에서 팔감을 구하여 귀가하다 마을에 오폭 투하된 포탄에 머리를 맞아 즉사함.

1952년 : 이봉우, 이상복 부자가 바다 조업중 오폭에 손목 절단 등 부상

1956년 : 주민 김윤식씨의 두 아들 등 어린이 5명이 불발탄을 주어 가지고 놀던중 폭발하여 그중 어린



1960년 : 주민 1명 불발탄 폭발사고로 사망

1961년 : 주민 1명 고철 수집중 불발탄 폭발로 사망

1962년 : 외지인 2명 사격연습을 구경하던중 포탄 파편에 사망

1963년 : 주민 이철중씨 연습탄 파편에 의해 옆구리 부상

1965년 : 주민 김현복씨가 마을로 오폭된 기총사격탄에 머리를 맞고 사망

1965년 : 주민 백화련씨 연습탄 파편에 옆구리 부상

1966년 : 주민 최대식씨 불발탄에 의해 엄지 손가락 잘려나감

1976년 : 주민 이영자씨(당시 33세)가 임신한, 만삭의 몸으로 폭격장 인근 해안에서 굴을 채취하던 중 투하된 포탄에 명중되어 형체를 알아 볼수 없을 정도의 처참한 죽음을 당하였으나 미군폭격장 책임자는 망인의 남편인 한장수씨를 폭격장내 종업원으로 채용하여 이를 무마 하였음

1973년 : 주민 김이뿐씨 불발탄에 의하여 옆구리 중상, 미군헬기로 긴급 후송수술

1989년 : 주민 최중복씨가 마을을 지나가던 중 오폭 투하된 연습용 포탄이 머리 위 수십 센티미터 부근을 지나 옆에 떨어지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땅에 넘어져 뇌진탕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았음

1989년 : 어민 손달근씨가 바다 폭격장 외각선으로부터 4.5킬로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중 헬리콥터가 발사한 기관총일이 오른쪽 팔목을 관통 당하는 중상을 입었음(변호사를 선임, 소송 제기 재판을 통하여 사상 처음 피해 배상(7천 5백만원)을 받음)

1995년 : 다양한 불발탄을 폭발 처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폭발 진동으로 수백가구 주택의 지붕과 벽이 내려 앓고 균열이 가는등 재산피해 발생하여 손해 배상을 받았으나 많은 피해 주민들이 무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누락되었음

1996년 : 미공군의 헬리콥터에서 발사된 탄환이 주민 백신기씨의 주택의 창문을 뚫고 방안으로 오폭되어 백신기씨의 모 강옥순씨가 충격으로 병원의 진료를 받음

#### 2) 소음피해

직접피해지역은 육지사격장의 외곽에 설치된 철조망과 접속된 주거지역으로부터 사격장에서 4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농촌 및 어촌 지역이다. 사격장의 동쪽에 위치한 매향 2리의 경우에는 사격표적을 향하여 내륙으로부터 해안방향으로 급강하는 전폭기가 마을의 중앙 상공을 통과하여 저공비행을 하므로, 전폭기의 비행폭음으로 주택의 지붕과 벽이 심하게 흔들리는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전폭기의 엔진 폭음, 기관포사격 및 기총 사격이 행해지는 순간에는 사격장 주변의 직접 피해지역인 주거지역에서는 지축을 뒤흔드는 듯한 굉음으로 인하여 집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임을 확인하였다.

주민들의 진정에 따라 미군 당국이 직접 실시한 소음도 조사에 의하면 사격장 인근 지역의 평균 소음도는 90~110WECPNL(국제민간항공기구 소음규제 권고치)에 달하며, 이러한 소음지역은 주거불능지역으로서 녹지대 등 완충지대를 조성해야 하는 지역이라고 한다.

인도주의실천협의회가 1989년 4월 1일부터 4월 23일까지의 기간 중 수 차례의 매향리지역 답사와 역학조사 결과 발표한 조사보고에 의하면 매향리 미공군사격장 인근 주민의 35.3퍼센트가 소음성 난청에 걸려 있으며, 대조지역과 비교하여 소음피해와 연관이 깊은 고혈압환자 발생률 또한 현저하게 높은 수치

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밖에도 사격장 인근주민의 8할 이상이 이명증세를 호소하고 있고, 많은 주민들이 심계의 이상항진과 정서불안, 현기증 등을 나타내고 있다. 또 이와 같은 상시적인 극심한 소음은 모든 주민들의 생활을 짜증스럽게 만들고, 유아들의 경기 원인이 되며, 소년들의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쳐 문제소년들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민들은 호소하고 있다.

### 3) 이밖의 크고 작은 마을 피해

1952년 평화롭기만 하던 이 마을에는 주민들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미공군 전폭기가 무차별 폭격연습을 시작하였다. 그후 46년 세월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도 수백회씩 주택 지붕위로 저공비행하며 기총 사격 등이 계속 되어 왔다.

이에따라 매항리에는 새가 살지 않는다. 무자비한 폭격 소음에 새가 안정적으로 부화하지 못하여 도저히 새들이 생식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매항리에 사는 젖소들은 외지의 젖소보다 좌우랑이 적다. 다른 마을에서 임신한 소가 매항리에 오면 새끼를 낳지 못하고 거의 유산을 한다. 매항리에서 자란 소는 소음에 적응이 되어 무사히 새끼를 낳지만 송아지가 작다고 한다. 닭들 역시 폭음에 놀라 양계장 한쪽으로 몰려 암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매항리 앞바다에는 미공군 전폭기 폭격 훈련의 목표물인 농섬과 구비섬이 있다. 전폭기는 저공비행과 고공비행을 번갈아 가며 섬에 폭탄 투하 연습을 한다. 그 중 구비섬은 실전형 대형 폭탄으로 섬이 거의 끊어져 없어졌다. 구비섬은 지도에만 있는 유령섬이 된 것이다.

또한 매항리 옆 동네인 석천리에는 석천초등학교가 있는데 89년 매항리 소음문제가 알려진 후 교육부에 제기하여 교실에 이중창을 달게 하였다. 원래 이중창을 달때에는 에어콘을 함께 설치해야 하는데 이곳은 에어콘 설치를 하지 않아 여름에는 그대로 소음에 노출되고 있다.

아침 조회시간에 비행기 소음이 있을때에는 교장 선생님이 훈화를 중단하고 그대로 있고 수업 중에도 선생님이 말을 멈춰 버린다. 그러나 교사들이 사용하는 교재에는 “우리 고장에는 미공군 사격장으로 인하여 소음이 심각하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참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석천 초등학교에는 전교생이 6~700명이었는데 현재는 4~500명으로 줄어든 상태이다. 또한 매항리 교회는 교회안에 선교유아원을 운영하기 위해 허가까지 받았으나 시끄러운 주변 환경 때문에 며칠만에 인가를 취소하였다.

미군측은 주민들이 이전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실제 전쟁 상황처럼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야 미군들의 훈련이 현장감 있기 때문이다. 외지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매항리 지역 폭음에 크게 놀라곤 한다. 실제로 폭음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들은 운전대를 놓치기도 하고 주민들의 시위를 진압하던 전경들이 방패를 떨어뜨리기도 하였다.

### ■ 매항리 주민들의 투쟁

주민들은 89년 민주화 분위기가 무르익자 사격장으로 인한 고통과 불편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관계기관에 사격장 이전과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1년 가량 계속된 사격장 점거 농성과 시위는 사격장 이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채 주민대표들이 무더기 형사처벌을 받는 등 상처만을 남긴채 막을 내렸다.

그후 94년 12월 미 제7공군 ‘쿠니’ 사격장에서 화약 폐기물 처리작업도중 폭발 사고가 일어나 인근 주택 130여채 지붕이 내려앉고 벽에 금이 가거나 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 사고가 나자 미군 당



국은 세입자를 포함한 피해를 입은 180여세대에게 충분한 피해보상을 약속했으나 세대당 3만원꼴도 되지 않는 500만원을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뒤 한미행정협정의 피해보상 절차를 이유로 보상을 미루었다.

95년 수원지검 국가배상심의위원회는 쿠니사격장 주변을 둘러싼 주민피해 보상액을 모두 3억5천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발표했고 이 액수 역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28억원과는 큰 차이를 보였었다.

그리고 97년 7월 국내 처음으로 매항리 등 9개리 일대 주민들은 ‘쿠니 사격장’이 들어선 68년부터 28년 동안 주·야간 되풀이되는 전투기의 사격·폭격 훈련에 의한 소음공해 피해 보상을 위해 3백50억원을 국가를 상대로 소송했다. 이 소송은 98년 4월 22일 1차 공판에 이어 5월 22일 1차 현장조사가 진행되는 등 진척의 기미를 서서히 보이고 있으나 전망은 아직 불투명하다.

## 소장

### 원고 1. 진석진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947

### 2. 전만규

위 같은 리 947의 12

### 3. 민창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국,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도재형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6의 3 창립빌딩 2층(135-080)

###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손해배상청구의 소

#### 청구 취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깊을 때 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제1항은 가집행될 수 있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 원인

- 원고들은 각자 조상대대로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석천리 및 이화리에서 서로 이웃하며 평화롭게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여 왔습니다.
- 그런데 6.25 전쟁중인 1952년경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협의에 의하여 원고들이 살고 있는 마을 바로 한가운데의 농지 29만평과 인근해상 690만평을 미공군의 사격장으로 제공하여 그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세기 가까이 미 공군은 동 사격장에서 주야간 사격연습을 해 왔습니다.
- 위 사격은 F-16 및 A-10 등 여러종류의 미공군 전투기가 1일 180회 가량 마을 바로 위를 선회하다가 육상 및 해상 표적에 기총소사를 가하고 포탄을 투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지는데, 그 선회 비행시나 사격 또는 폭탄을 투하하는 과정에서 오사격 또는 오폭으로 인한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실제로 과거 상당수의 사고가 일어나 주민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피해가 있었으며 1994. 12.에도 폭탄 폭음으로 많은 가옥이 파손되어 배상을 받은 일이 있음), 특히 사격의 전후 과정에서 극심한 소음과 고마를 파멸시키는 듯한 굉음이 발생하여(갑제8호증 : 1997. 1. 작성된 구방부 검토서에도 소음도가 90내지 120데시벨로서 김포공항보다 소음정도가 극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원고들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은 큰 고통을 받아 왔으며, 가축의 생장발

육과 번식에도 영향을 미쳐 낙농업과 양계업의 운영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어 왔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비롯한 주민들은 1987년에 있었던 민주화운동의 영향으로 1988년 경부터 당국에 청원하여 그동안의 피해 배상 및 소음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해 주도록 요청했으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배상은 물론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주지 아니한채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 내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및 동 조약에 따른 민사특별법 제2조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한국 국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위와같이 원고들이 그동안 입은 모든 소음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의 편의상 우선 정신적 피해인 위자료의 일부로 원고들 각자에 대하여 돈 1,000,000원씩 및 이에 대한 청구 취지 기재의 자연손해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소에 이른 것입니다.

#### 입증방법

- |                  |          |
|------------------|----------|
| 1. 갑제1호증의 1내지 15 | 각 주민등록등본 |
| 1. 갑제 2호증        | 진정서      |
| 1. 갑제3호증         | 회신       |
| 1. 갑제4호증         | 회신       |
| 1. 갑제5호증         | 회신       |
| 1. 갑제6호증         | 지휘보고     |
| 1. 갑제7호증         | 검토보고서    |
| 1. 갑제8호증         | 청원검토서    |
- 기타 입증방법은 변론시 제출하겠습니다.

#### 첨부서류

- 소장 부분 1통
- 위 입증방법 각 1통
- 위임장
- 납부서

1998. 2.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국  
변호사 이석태  
변호사 김형태  
변호사 조용환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전화 : 507-2316

변호사 유재방 김창국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팩스 : 568-3439

## 미군사격장 폭발사고 보상 외면

피해기구당 3만원 지급·주민들 엄동속 11일째 천막 농성

속보=경기도 화성 미공군 사격장 폭발사고(〈한겨레신문〉 94년 12월 15일자 23면)와 관련해 미군 당국이 피해 보상을 미뤄 주민들이 추위 속에 11일째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5일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4일 이곳 미 제7공군 '쿠니' 사격장에서 회약 폐기물 처리작업 도중 폭발사고가 일어나 인근 주택 1백30여채의 지붕이 내려앉고 벽에 금이 가 붕괴 위험이 있는 10여세대 주민 40여명이 지난달 26일부터 사격장 앞에 30평 규모의 비닐집을 만들어 보상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사고가 나자 미군 당국은 세입

자를 포함해 피해를 입은 1백80여

세대에게 충분한 피해보상을 약속했으나 세대당 3만원꼴로 되지 않는 5백만원을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뒤 한미행정협정의 피해보상 절차를 이유로 현재까지 보상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미군 당국은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해 배상심의위원회에 보상을 신청할 경우 한미행협에 따라 보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주민들은 전문기관의 조사 없이는 피해액 산출이 어려울 뿐 아니라 절차를 밟을 경우 보상까지는 1년 이상 걸려 생활에 불편을 겪게 된다며

시급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 백연현(36)씨 등 지붕이 내려앉거나 벽에 금이 가 붕괴 위험이 있는 10여세대 주민 40여명이 지난달 26일부터 사격장 앞에 30평 규모의 비닐집을 만들어 보상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대책위원회(위원장 전만규 어촌계장)를 구성하고 국방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보냈으나 국방부가 회신조차 하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반발하고 있다.

화성/배경록 기자

### □ 폭발사고 물의 화성 미공군 사격장

종일 사격훈련 청각장애등 40년간 온갖피해

89년 보상·이전요구 묵살···주민들 불만고조

화성/배경록 기자

지난해 12월 주민 2명이 다치고 주택과 공장건물 1백여채를 파손시키는 폭발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 보상이 늦어져 물의를 빚고 있는(〈한겨레신문〉 6월 12일자 1면) 경기도 화성의 미 공군 '쿠니' 사격장은 지난 89년에도 주민들의 이전 요구 시위가 1년 가량 이어져 관심을 끌었던 곳이다.

6·25 직후인 54년부터 미 공군이 이곳 남양반도 앞바다 농심을 사격장으로 사용하다 68년 마을 한복판의 농경지 38만여평을 수용해 사격장을 확장하면서부터 심심치 않게 사고가 발생해 주민과 미군 사이에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전투기 사격훈련으로 주민 상당수가 6백10㏊에 포함되면서 정부가 간

청각 장애를 앓고 있으며 가축이 유산하고 불발 포탄이 민가에 떨어져 집이 망가지는 등 40년 동안 이곳 주민들이 겪어온 피해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주민들은 89년 민주화 분위기 빛고 있는(〈한겨레신문〉 6월 12일자 1면) 경기도 화성의 미 공군 '쿠니' 사격장은 지난 89년에도 주민들의 이전 요구 시위가 1년 가량 이어져 관심을 끌었던 곳이다.

이번 폭발사고에 대해 미군 당국은 피해조사가 끝나는 대로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피해 규모와 보상절차를 둘러싸고 주민과 이전을 빛어 보상이 늦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피해 보상에 앞서 미군의 부주의로 이런 사고가 잇따르거나 정부가 간척 사업이 끝나는 대로 사격장을 이전해주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 분노는 또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군은 91년부터 이곳 앞바다가 화용지구 간척사업지구 6천 6㏊에 포함되면서 정부가 간

## 미군사격장 소음 피해 주민들 350억 집단소송

화성군 매향리 3천5백여명 국가상대 보상 청구키로

경기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주한미군 제7공군 사격장('쿠니' 사격장) 일대 7백30여 가구 주민 3천 5백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사격장 소음을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 3백 50억원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낼 방침이다.

미군 훈련장 주변 주민들이 미군에 의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이유로 집단 소송을 내는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10일 '매향리 미 공군 폭격소음 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전만규·40)와 관련 변호사 등에 따르면, 지난 68년 매향리에 '쿠니' 사격장

이 들어선 이후 계속된 폭격 및 사격 훈련에 따른 피해에 대해 주민 1인당 1천만원씩 모두 3백50억원 환경피해를 겪은 물론 주민들이

생명권을 위협받아 왔는데 국가

가 이를 방임해온 데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용역 기자

서울 미수합동법률사무소의 이석태·변호사는 "한미행정협정에 주한미군이 직무상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게

### □ 화성 미군 쿠니사격장 피해 3백50억 소송

## 안보에 발목잡힌 기본권 되찾기

주민, 28년간 소음 시달려···외국승소판례 영향 미칠듯

수원/총용역 기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미 제7공군 전투기 훈련장인 '쿠니' 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3백 50억원의 집단 피해 보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한 것은 미군기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동안 피해를 겪고도 참아온 주민들이 최소한의 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낸 첫 법적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소송을 준비중인 경기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등 9개리 일대 주민들은 '쿠니' 사격장이 들어선 68년부터 28년 동안 평일에 격주로

주·야간 되풀이되는 전투기의 사격·폭격 훈련에 소음공해는 물론 오폭 불안에 시달려왔다.

현장 조사중인 김선태 대전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쿠니 사격장 주변 소음도는 1백 데시벨을 넘고 있다"며 "이는 일반주거지의 허용 소음 40~60데시벨을 적어도 2배 이상 초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한미행정협정'은 "주한미군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주민 피해에 대해 국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보상 요구가 제기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지난 89

년 3월 15일 도쿄 지방법원이 도쿄 부근 미공군 기지에서 야간비행 소음에 시달려온 주민들에게 보상

금으로 1인당 최고 1백40만엔(1만 1천달러)까지 지급하도록 일본 정부에 명령한 적이 있어, 이런 외국의 판례가 이번 소송에 어필될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범죄 신고센터의 김용한(38)씨는 "그동안 안보문제의 특수성을 이유로 자국민의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방치해온 게 부끄러운 우리 현실"이라며 "이제 국기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 쿠니사격장 피해보상 3억5천만원 잠정결정

주민 주장과 큰차..집단반발 예상

수원지검 국가배상심의위원회(위원장 김승규)는 5일 미국공군 쿠니사격장에서 발생한 주민피해 보상액은 모두 3억 5천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보상액은 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보상액 28억원과 큰 차이를 보여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된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13~17일

음에 따른 젖소 유산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지난 6월 말 수원지검에 피해배상을 청구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 “사격장 확장 움직임 유감 인근주민 지원 서둘러야”

“사격장이 들어선 뒤부터 소음과 먼지 등 각종 피해는 물론 오염시설에 의한 생명의 위험까지 견뎌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군 공식인 ‘비암리 사격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는 비암리리장 서현석(37·사진)씨는 사격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고통을 이렇게 헌소연했다.

그는 “정부가 소음기소음과 인근 주민에게는 복지회복과 지원주는 등 각종 지원을 하면서 안보를 위해 건전과 재산상의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사격장 인근 주민들에겐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는 것 같은 행위에 어우러진다”며 “특별법을 만들고 시각장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석 기자

### “이전문제등 대책 적극검토 님비현상 민원증가 주원인”

군당국은 사격장과 혼란장을 둘러싼 인근 주민들의 현실적인 불편을 위해 협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해를 구하고 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모두 88차례의 민원이 발생했다. 그 가운데 사격장과 혼란장 이전 요구가 38회로 42.1%를 차지하고 있다.

주민들은 그동안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조사해 주민 1천여명의 평균 피해액은 35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곳 사격장 문제는 법정으로까지 비화할 것으로 보인다.

홍용덕 기자

## 미군사격장 폭음피해 첫 손배소

### 화성 인근주민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화성/홍용덕 기자

국내 처음으로 미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폭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쿠니사격장 미공군 폭음 피해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전만규·42)는 지난달 28일 국가를 상대로 미공군의 폭음에 따른 주민 15명의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주민 1인당 100만원씩 1500만원의



“쿠니사격장” 피해가 있따라 지난 8년 3월 주민들은 사격장 이전을 요구하는 집단시위를 수개월 동안 벌이기도 했으나 번역기 지난 현재까지 사격장이 이전되지 않고 있다.

### □ 화성 미공군 ‘쿠니사격장’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일대에는 미국 제7공군의 ‘쿠니사격장’은 지난 45년간 유연과 소음 피해로 사격장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과 마찰을 벌여온 대표적 사격장 중 주민과 주민들의 사격장 이용 요구를 받아들이 수 있다며, 대신 올해 1월 사격장 이전에 들어온 주민들은 도·일요일을 빼고 매일 미군 전투기와 기총사격과 폭탄 투하훈련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한번에 3대의 전투기를 이뤄 실시하는 훈련에는 전투기 1대가 보통 기총사격과 폭탄 투하와 함께 30~40여차례로 계속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주변의 배설식 이화장과 미마 720여가구 주민 350여명은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폭음과 폭발음으로 속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음에 따른 기아지침과 아산공장에 철거된 날에는 등 2차례 오후사고가 발생했다.

### □ “민원 최소화” 군당국 입장

#### “이전문제등 대책 적극검토 님비현상 민원증가 주원인”

군당국은 사격장과 혼란장을 둘러싼 인근 주민들의 현실적인 불편을 위해 협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해를 구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혼란장을 옮기려 해도 이전에 정한 조건에 맞지 않아 혼란장을 옮기고자 했지만, 그 과정에서 혼란장을 옮기려 해도 혼란장 이전 요구가 38회로 42.1%를 차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원인으로는 △각종 혼란으로 인한 소음·먼지·진동 피해 △기존 혼란장 이전 위 평강화장에 대한 기내처리 기기와 이 기주의로 혼란장 신설에 부정적 반응 등

을 들었다. 육군은 주민들의 현실적인 불편을 인정하면서도 내집주민에는 안된다는 ‘님비현상’이 민원증가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혼란장을 옮기려 해도 이전에 정한 조건에 맞지 않아 혼란장을 옮기고자 했지만, 그 과정에서 혼란장을 옮기려 해도 혼란장 이전 요구가 38회로 42.1%를 차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홍용덕 기자

- 일 고법, 미군기지 주변 주민에 국가배상 판결 -

극동 최대의 미군기지인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음피해 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22일 국가에 대해 주민들에게 13억7천만엔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후쿠오카 고법 나하 지원은 이날 재판에서 소음피해 정도를 확대 인정, 과거의 피해 부분에 대한 배상 대상 주민수와 금액이 1심 판결보다 훨씬 가중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음지수(WECPNL)를 1심에서 인정했던 8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확대, 배상 주민수가 7백68명에서 8백 67명으로 늘었으며, 배상액도 8억엔에서 5억7천만엔이 불었났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측이 제기한 미군기의 야간비행 금지와 장래의 피해에 대한 청구 부분은 기각했다.

원고측은 재판에서 오키나와현 당국이 기지 주변에서 실시한 건간영향조사 결과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주민들에게 소음성 난청 등 심각한 건강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가측은 “오키나와현의 조사는 엉터리로 원고에 난청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반론을 폈다. 98년 5월 22일(도쿄 연합)

(2) 동두천 미2사단 건축폐기물 부대내 불법매립

■ 개관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미 제 2 사단 케이시 부대 내에 영내 건축 과정에서 나온 건축폐기물을 수천만 톤을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건축폐기물에는 페아스 콘, 콘크리트 등의 건축폐기물과 임을 유발하는 석면, 우레탄 등 특정폐기물이 섞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 경찰은 조사결과 이 건축폐기물은 1980년도부터 미군과장의 지시에 따라 한·미 군 속들이 실행한 것을 밝혀냈다. 경



찰은 3월 18일 극동, 벽산, 신성, 한진 등 관련 건설업체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조사했다.

미군과장은 “도로반 반장 이영해(61)씨에게 공사과정에서 나온 건축폐기물을 가스처리 훈련장 등으로 운반해 분류하라고 했을뿐 매립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의정부 경찰서는 3월 23일 당시 불법매립 공사에 관계했던 인부 6명으로부터 “이영해씨의 감독 아래 지난 96년부터 97년 사이에 집 중적으로 불도저 3대와 덤프트럭 2대, 페이로더, 포크레인 등 시설공병대 장비를 동원해 건축폐기물 매

립공사를 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상태이다.

현재 경찰수사는 이영해씨를 불법 매립한 관계로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경찰은 한국인 군속 이영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영장은 집행되지 않았다. 미8군 사령부에서 의정부 경찰서와 의정부지청에 3월말 협조공문을 보내 구속을 집행하지 말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 공문에서는 4월 17일에 있었던 SOFA 협동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니 결과가 나올때까지 구속영장집행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협동위원회에서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7월 초에 열릴 SOFA 환경분과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사실상 미군측의 압력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이영해씨는 현재 미군부대에 출근을 계속하고 있다.



운동본부 제 98-12호 1998.4.15

수 신 : 한미연합군 사령관

발 신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744-1211)

제 목 : 동두천 미 2사단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사건 해결 촉구의 건

귀하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본 운동본부는 여성, 종교, 인권, 노동, 청년, 학생 등 각계각층의 21개 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하여 주한미군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극복하고 평등한 한미관계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본 운동본부는 지난 3월 초 지역주민의 제보와 3월 18일 한겨레 신문 보도를 통하여 매우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동두천 미 2사단 케이시 부대 내 수만평의 부지에 건축폐기물 수천만톤이 불법매립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건축폐기물 불법매립을 80년도부터 지금까지 자행했다는 사실과 건축폐기물 중에는 암을 일으키는 석면, 우레탄 등 특정폐기물도 섞여있다는 사실에 더욱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주한미군은 45년 이땅에 진주한 아래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92년 미군병사 캐네스 마클이 윤금이씨를 참혹하게 살해한 사건과 더불어 미군이 한국인에게 저지른 범죄는 지금까지 10만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모자라 기지 주변 토양과 하천 등의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기지내 야산에 건축폐기물까지 불법매립해 자연훼손과 주변 주민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동두천은 우리 선조들이 살아온 땅이며,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땅입니다. 통일에 되면 우리나라의 중심이 될 동두천에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행위인 건축폐기물 불법매립은 민족적 자존심에 대한 유린행위입니다. 또한 미군범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환경파괴행위는 우호적인 한미관계에도 걸림돌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운동본부는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해결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1. 동두천 미 2사단내 불법으로 매립된 건축폐기물을 빠른 시일내에 적법한 절차를 거친 처리와 훼손된 야산을 원상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사건에 대한 수사협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3. 주한미군당국은 이런 범죄가 또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미군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4.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의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합니다.
5. 이 서한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4월 30일까지 요구합니다.

1998년 4월 15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3) 유린당한 수락산 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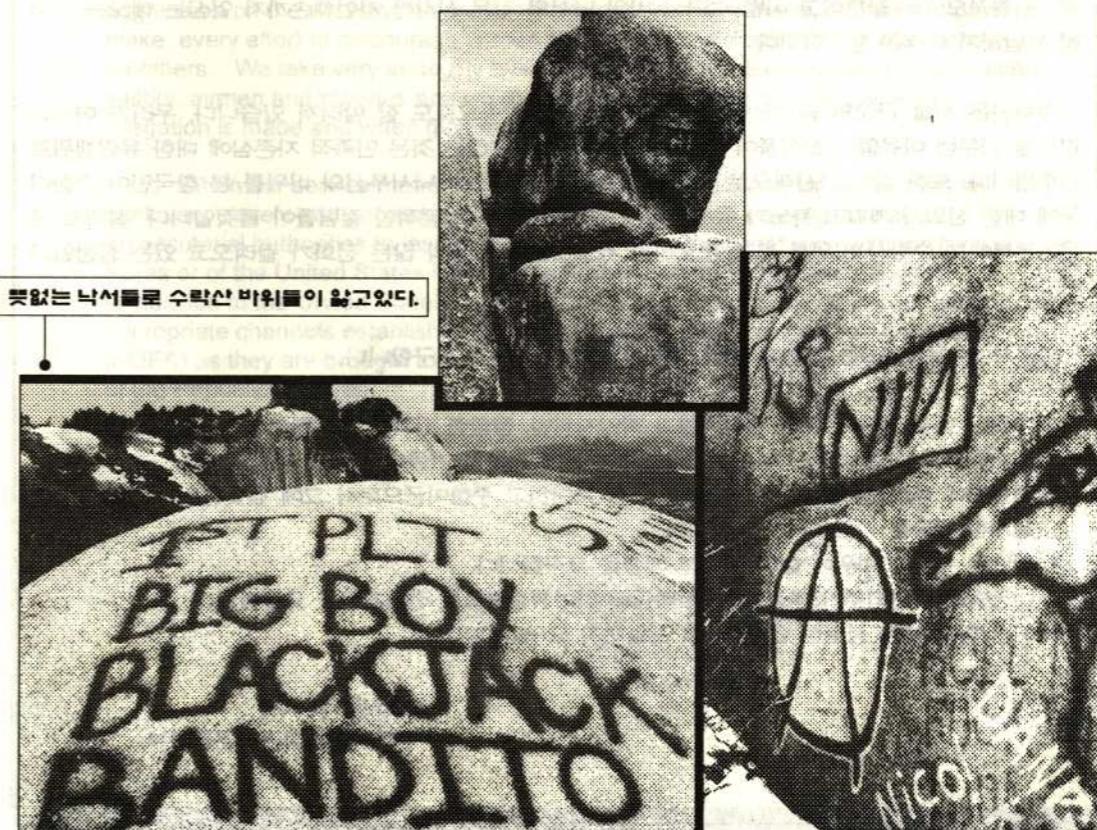
#### ■ 개관

지난 2월 21일 '한겨례 21' 국내 주간지에는 서울 근교의 명산으로 꼽히는 수락산 꼭대기 바위가 주한 미군의 흉물스러운 낙서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이를 낙서는 대부분이 아무 의미없는 것으로 낯선 미국인의 이름, 부대 명칭과 마크를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려 놓았다. 부대마크가 그려진 몇몇 바위들은 위정부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마치 주한미군들이 이땅의 점령군인듯한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다.

#### ■ 운동본부 대응

운동본부는 주한미군의 물지각한 행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과촉구 공문을 4월 중순 발송했다. 또한 금요집회 속에서 최근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강력한 규탄집회를 벌였다. 그후 미군측은 4월 말경 책임회피의 답변을 보내왔다. 현재 수락산 바위는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채 그대로이다.

뜻없는 낙서들로 수락산 바위들이 앓고 있다.



운동본부제 98-5호

수 신 : 존 에이지 틸렐리 한미연합 사령관

발 신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제 목 : 주한미군의 수락산 바위 낙서에 대한 사과촉구의 건

1998.4.13

귀하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본 운동본부는 여성, 종교, 인권, 노동, 청년 학생, 등 각계각층의 21개 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하여 주한미군으로 인한 각종 폐해를 극복하고 평등한 한미관계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본 운동본부는 지난 2월 21일자 '한겨레21' 국내 주간지 보도를 통하여 매우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명산으로 꼽히는 수락산 꼭대기의 바위들이 주한미군의 흉물스런 낙서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낯선 미국인의 이름과 부대명칭, 소속부대를 상징하는 그림들이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려지고 아무 의미없는 낙서들이 즐비하여 수려한 바위 자체의 모습들은 찾아볼 수 없는 안타까운 사진들도 볼수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은 45년 이땅에 진주한 이래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귀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짐작하는 92년 케네스 마클에 의한 윤금이씨 살해사건을 중심으로 강도, 폭행, 살인 등 의 잔인한 범죄들을 한국민을 상대로 해마다 2,000건이 넘도록 저질러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범죄를 저질르는 것도 모자라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는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한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이번 수락산 바위 낙서와 같은 심각한 자연훼손까지 일삼는 태도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입니다.

수락산은 서울 근교의 명산으로 등산객이 매우 많은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끼는 강토를 아무런 이유없이 심심풀이 삼아 낙서를 하고 훼손하는 것은 민족적 자존심에 대한 유린행위로 간주됩니다. 또한 잠시 등산객으로 수락산에 왔다가 흉물스런 낙서투성의 바위를 본 한국인이 주한미군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분노가 유발된다면 한미관계에도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것입니다. 실제로 본 운동본부에는 수락산 바위를 보고 분노하여 제보하는 국민들의 많은 전화가 걸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수락산 바위 훼손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정중한 사과를 촉구합니다.
2. 조속한 시일내로 수락산 바위를 원상회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둔지에 대해 행해지는 환경오염을 즉각 중단하고 주한미군으로서 그에 걸맞는 행동지침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4. 훼손된 수락산 바위에 대한 적법한 배상을 요구합니다.
5. 미군범죄의 면죄부가 되고 있는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전면개정을 요구합니다
6. 이 서한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4월 30일까지 요구합니다.

1998년 4월 13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HEADQUARTERS, UNITED STATES FORCES, KOREA

UNIT # 15237  
APO AP 96205-0010

23 April 1998

National Campaign for Eradication of Crime

136-46 Yongi-dong, Chongro-ku  
Seoul, Korea

Dear National Campaign Officers:

The Commander in Chief, United Nations Command, Combined Forces Command and United States Forces, Korea asked me to respond to your letters of 13 and 15 April 1998 regarding allegations of crimes committed by members of the U.S. military.

Rest assured that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makes every effort to be good guests in your country in our combined effort with the Korean people to deter aggress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ast we have made, and will continue to make, every effort to discourage crimes and inappropriate behavior by our service members. We take very seriously every allegation of crime committed by our soldiers, sailors, airmen and marines and we always seek to do the right thing when an allegation is made and when guilt is proven.

When our service members are not good neighbors and violate Korean law, we work very closely and cooperate in every way with Korean investigative and prosecutorial authorities to insure that justice is done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Korea or of the United States if the Korean prosecutorial authorities relinquish jurisdiction to the United States. We will address the issues raised in your letter in the appropriate channels established under the bilateral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as they are brought to us by the representatives of the duly elected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incerely,

VINCENT J. PUCCIO  
Colonel, U.S. Army  
Judge Advocate

## (4) 미8군 메디슨 통신부대 의왕시 백운산 기름 유출

## ■ 개관

경기도 의왕시 백운산 정상 부근 왕립천 상류에서 기름 유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의왕시 왕곡동 백운산 정상에 있는 미8군 메디슨기지 내 경유 탱크를 연결하는 노후한 지하 배관이 터져 일어난 이 사고로 백운산과 왕립천 계곡 일대 폭 3~5m, 약 800m 구간 내 토양이 심한 악취를 풍기며 쓰고 있다. 유출사고가 왕립천 계곡에서 불과 20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고 장기간에 걸쳐 지하로 스며든 기름이 암반을 타고 왕립천으로 곧바로 흘러들어 장마철을 앞두고 전체가 오염될 우려가 있다.



&lt;기름이 유출된 본체의 탱크&gt;

사고지역의 토양층은 20~80cm 두께로 광범위하게 기름에 절여 있고 환경전문가들은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정상 회복이 불가능한 최악의 산악 환경사고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사고가 발생한 것은 2월 말~3월 초로 추정되고 있으나 미8군측이 외부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비밀리에 두달여 동안 제거작업을 벌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시인 의왕시는 등산객의 신고로 3월 19일 사고를 처음 알았으나 행정권이 미치지 않는 미군측이 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사고 수습에 애를 먹었다.

환경부는 사건 발생 두달이 넘어서야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환경 행정의 허술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더구나 지난 5월 12일 실시된 한미 합동조사를 마친 후

“백운산 주변에 2차 오염 가능성은 없다”고 단정지어 환경단체들이 환경부의 안이한 행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미군측은 사고 직후인 3월 9일부터 약 800M 구간의 왕립천에 둑을 쌓고 흡착포로 기름 제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기름 유출양이 워낙 많고 유출지대가 넓어 겉으로 드러난 기름을 제거하는 작업만 해도 앞으로 3~4개월은 더 걸릴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백운산은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30년 가까이 무공해 지역으로 보존돼 왔으나 이번 사고로 회복 불능의 오염지역으로 남게 되었다.

## ■ 진행경과

5월 12일 한미합동조사단 (환경부 정책총괄과, 미8군, 서울대관계자)이 구성되어 백운산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과 수질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는 6월 12일 발표되었는데 기름유출 사고로 인근지역의 수질오염 농도가 폐수 배출 허용기준치를 최고 23배나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6월 11일 백운산 기름유출 사고지점 인근 5개 지점에서 토양과 수질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사고지점에 150m 떨어진 수중보의 수질오염도가 23.6ppm으로 청정지역의 폐수배출 허용기준인 1.0ppm을 23배 이상 초과했



다고 밝혔다. 또 100m 떨어진 외이자 계곡 수중보에서도 오염정도가 22.5ppm으로 나타나 오염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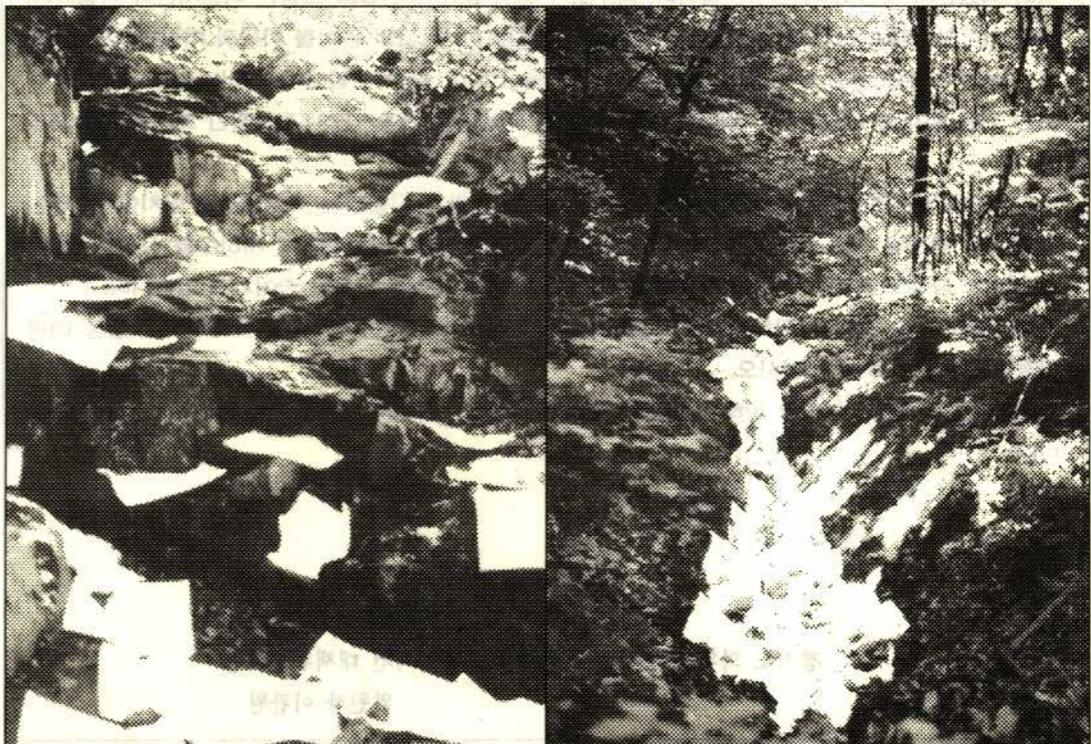
## ■ 운동본부 대응

운동본부에서 지난 5월 27일 백운산에 현장조사를 다녀왔다. 당시는 기름유출 발생일로부터 최소 2개월이 지난후인데 불구하고 기름에 절은 흙에서 나오는 악취로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다. 기름제거작업을 하는 노무자들은 사건직후(3월)에는 산에 오르기 힘들 정도로 냄새가 심하였고 흐르는 기름에 신발이 녹을 정도였다고 증언하였다. 노무자들은 겹겹이 쌓인 낙엽과 흙을 퍼내고 그 속에 있는 기름 절은 흙을 파냈다고 했다. 그런데 운동본부와 녹색연합에서 조사를 나갔던 5월 27일에도 여전히 기름 절은 흙에서 기름이 나와 계곡 물 위로 기름이 떠 있었다.

기름사고가 발생한 백운산 지역이 사유지(청풍김씨 종친회)임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의왕시와 환경부에서는 개인 소유의 재산이므로 국가가 나서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운동본부는 청풍 김씨 종친회와 연계를 갖고 합당한 배상신청을 하는 것과 오염된 백운산이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미군측의 배상신청을 기다리면서 기름 제거작업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기름 제거작업을 통해 환경을 회복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기름 제거작업은 단기적인 성과로만 만족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환경부는 기름 제거작업을 통해 환경을 회복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lt;기름제거 위해 흡착포가 덮여 있다&gt;



## 진정서

수신 : 김대중 대통령

참조 : 환경부 장관

발신 :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기름유출사건 주민대책위원회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182-1 마을회관)

제목 : 백운산 기름유출 원상회복의 건

1. 사건일시 : 1998년 3월 초순

2. 사건발생장소 :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산 405

3. 사건개요

1995년 경기도 의왕시에 백운산 꼭대기에 소재한 미8군 메디슨 통신기지내 경유탱크에서 노후된 기름 파이프에서 다량의 기름이 유출되어 산림과 농작물 심한 피해를 입었고 주민들의 식수가 오염되어 불편이 막심하였습니다. 그때에도 아무런 불평도 못하고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98년 3월 다시 2차에 걸쳐 똑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수차에 걸쳐 의왕시와 관계기관에 재발 방지대책과 원상회복,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3년전에도 기름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지하수를 먹던 주민들은 식수를 먼 곳까지 가서 물을 떠다 먹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가 닿지 않는 주민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백운산은 청풍김씨 소유의 촌산이지만 수목이 울창하고 맑은 물과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서울, 수원, 군포, 안양, 과천 등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많이 찾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코를 찌르는 기름 냄새로 등산객들의 발길이 뜸할 정도가 되었으니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미군부대라는 특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주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식수오염은 방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백운산 아래 185가구 주민 568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기름 때문에 지하수를 식수로 쓸 수 없습니다. 상수도 개설이 시급합니다. 또한 기름이 유출되어 흙과 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흡착포로 기름을 적시는 소극적인 방법 대신 유화제 사용등 더욱 강경한 조치를 취하여 주십시오.

산림훼손, 식수오염,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합니다.

1998년 6월 30일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백운산 기름유출사건 대책위원회  
위원장 이관원